

www.goe.go.kr

1



2025 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중등 학적 길라잡이

CONTENTS

01	법적 근거 및 용어	1
1.	법적 근거	3
2.	용어 및 해설	4
02	배정·입학관리	9
1.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11
2.	입학 등록 및 입학예정자 재배정	12
3.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5
03	전입학·전출	17
1.	전입학·전출	19
2.	교육환경 변경 전학	27
04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	31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33
2.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34
3.	유예	37
4.	면제	41
5.	정원 외 학적관리	44
6.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요약	48
0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51
1.	취학·재취학·편입학	53
2.	귀국학생 등	58



06 조기진급 및 졸업 75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7
2. 상급학교 조기입학	81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83
4. 졸업·명예졸업	84

07 기타(위탁교육 등) 87

1. 소년보호기관 위탁	89
2. 대안교육 위탁	93
3. 건강장애학생 등의 병원학교	97
4.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의 원격수업	98

08 고등학교 주요 학적 101

1. 휴학, 복학	103
2. 자퇴, 퇴학, 제적	105
3. 재입학, 편입학	110

09 부록 115

1. 중등 학적 Q&A 사례집	117
2. 관련 서식	191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01

CHAPTER



법적 근거 및 용어

1. 법적 근거
2. 용어 및 해설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법적 근거

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호, 시행 2024. 4. 25.)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43조(입학 자격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44호, 시행 2024. 11. 14.)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1호, 시행 2025. 2. 28.)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6조(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제27조(취학독려조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30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제2조(정의), 제5조(자비유학자격)

6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1조(목적),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7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제2조(정의)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6호)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2 | 용어 및 해설

1 의무교육: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2 입학: 학교에 들어감. (1학년 신입학)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재취학, 취학 포함)는 입학으로 처리함.
-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3 입학기일: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의 장이 정한 날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함.

4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예시)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5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6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자퇴 이후 재입학 시기는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시점 전일까지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7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 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
- 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음.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자료가 전송됨(재취학 학교에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

8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9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10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11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2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음.
- 조기진급 절차 및 방법
 - 1) 조기진급 신청(학생, 학부모) →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 평가 → 조기진급 인정 결정
 - 2)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의 {조기진급자관리} 탭에서 조기진급대상자로 등록함.
 - 3) 조기진급에 관련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함.
- 조기진급 사실은 1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 2026학년도부터는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입력 안내 예정임.

13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4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 1)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결석일수에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을 포함함.
 - 2)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의 {유급자관리} 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 3)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 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15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6 면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 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17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8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유예자가 발생한 경우 중학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유예자가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19 정원 외 학적관리: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 대상자로 결정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은 미인정결석에 한함.
- 보호자(학생)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신청하여 학교에서 승인한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20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1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2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3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재취학한 학생은 면제, 유예의 학적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의 이전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24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고교학점제 적용 학년(2027학년도 졸업생)은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 가능함.

25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음.
-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 1) 조기졸업 신청(학생, 학부모) → 대상자 선정 → 조기졸업 평가 → 조기졸업 인정 결정
 - 2) [학적-졸업처리-조기졸업자관리](중)/[학적-졸업/수료관리-조기졸업자관리](고)에서 조기졸업자를 등록함.
 - 3) 조기졸업에 관련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음.

26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 1)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2)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27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의 한 사유임).
 - 귀국 후 재취학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정규교육기관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인정유학
 - 인정유학을 제외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함.
 - 귀국 후 재취학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외의 재학 기간을 반영하여 학년을 배정함.

02

CHAPTER



배정·입학 관리

1.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2. 입학 등록 및 입학예정자 재배정
3. 취학의 독려 및 독촉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1 입학

가. 정의: 학교에 들어감(중학교 1학년에 신입학)

-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옴.

나. 자격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다. 시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참고사항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① 입학: 중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1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들어오는 경우), 국내 학생의 입학과 동일하게 처리함.

② 취학: 처음으로 외국 국적 학생이 의무교육기관에 학기 중에 들어오는 경우

- 대상자(①과 ②)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

* 나이스 처리 방법(①과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학생 등록 학적 생성 후 [추가입력/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자료를 입력함.

단, ①의 경우 전체 신입생 학적생성 이전에는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 관리]의 {기타(검정고시, 직접 입력)}탭에서 {추가}하여 '입학구분'을 기타(학력인정)으로 선택하고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입력 후 {저장 }하여 다른 신입생과 함께 학적을 생성하고 입학처리 후 추가 자료를 입력함.

2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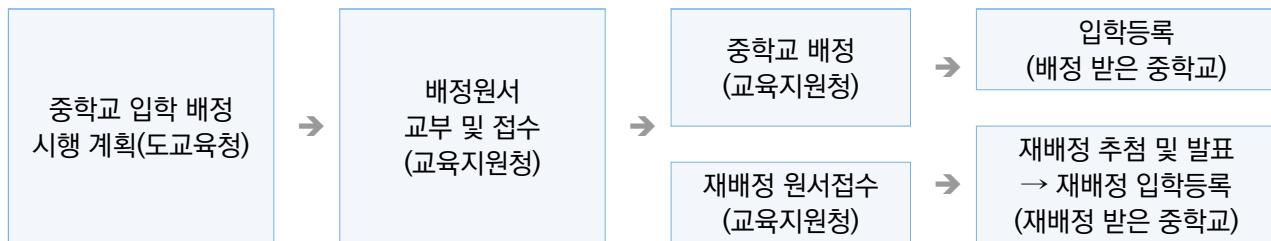
가. 초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재학생이 아닌 기타 지원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나. 교육장은 학생이 입학할 중학교를 배정하여 초등학교의 장 및 지원자에게 통보함.

다. 초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배정통지서(입학등록일은 포함하거나 별도 안내)를 학생에 교부함.

3 입학업무 주요 절차



2 입학 등록 및 입학예정자 재배정

1 입학등록일(신입생 예비 소집일)의 결정

- 가.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등록일을 정하여,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 나. 입학등록일은 본 입학등록일과 최소 1회 이상의 추가 입학등록일을 정함.
- 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교육장이 정한 입학등록일과 다른 날에 입학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변경된 입학등록일을 교육장에게 통보함.
※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신설학교, 학교 석면공사, 증축 공사 등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입학등록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2 입학 등록 절차의 실시

(중학교의 장)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을 확인하여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 보고
(교육장) 관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장) 본 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추가 입학등록일을 통지
추가 입학등록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경찰 협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서에 안내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



(중학교의 장) 추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을 확인하여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장) 관내 학교 출석현황을 취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장) 본 입학등록일 및 추가 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 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 협조 등의 조치 시행

3 중학교 입학예정자 재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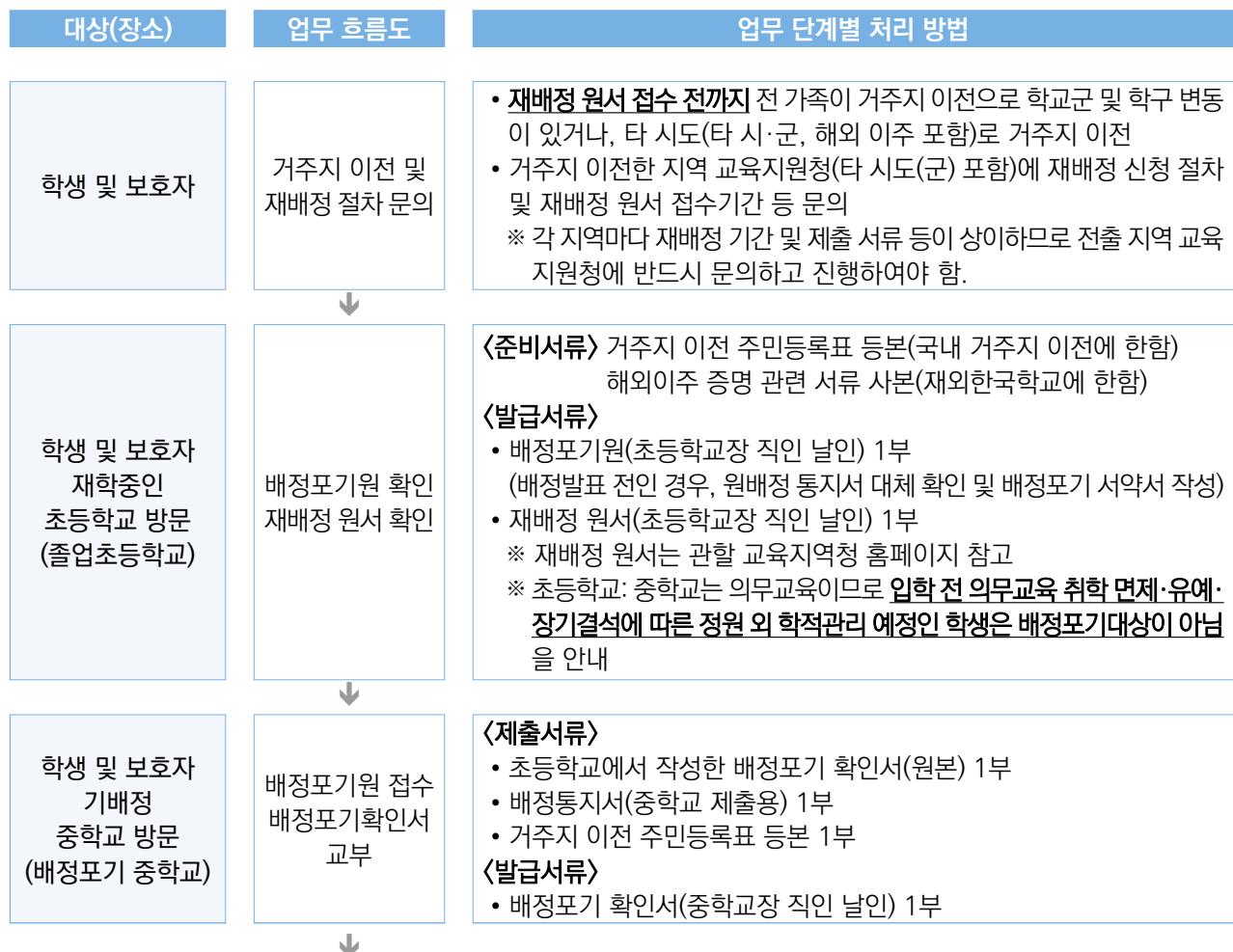
가. 재배정 대상자

- 1)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동일 시·군 내에서 다른 중학교(구)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한 학생
- 2)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전 가족이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 3)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본 배정에서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재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4) 부 또는 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중 부·모의 인사상 전보 조치가 불가하여 재배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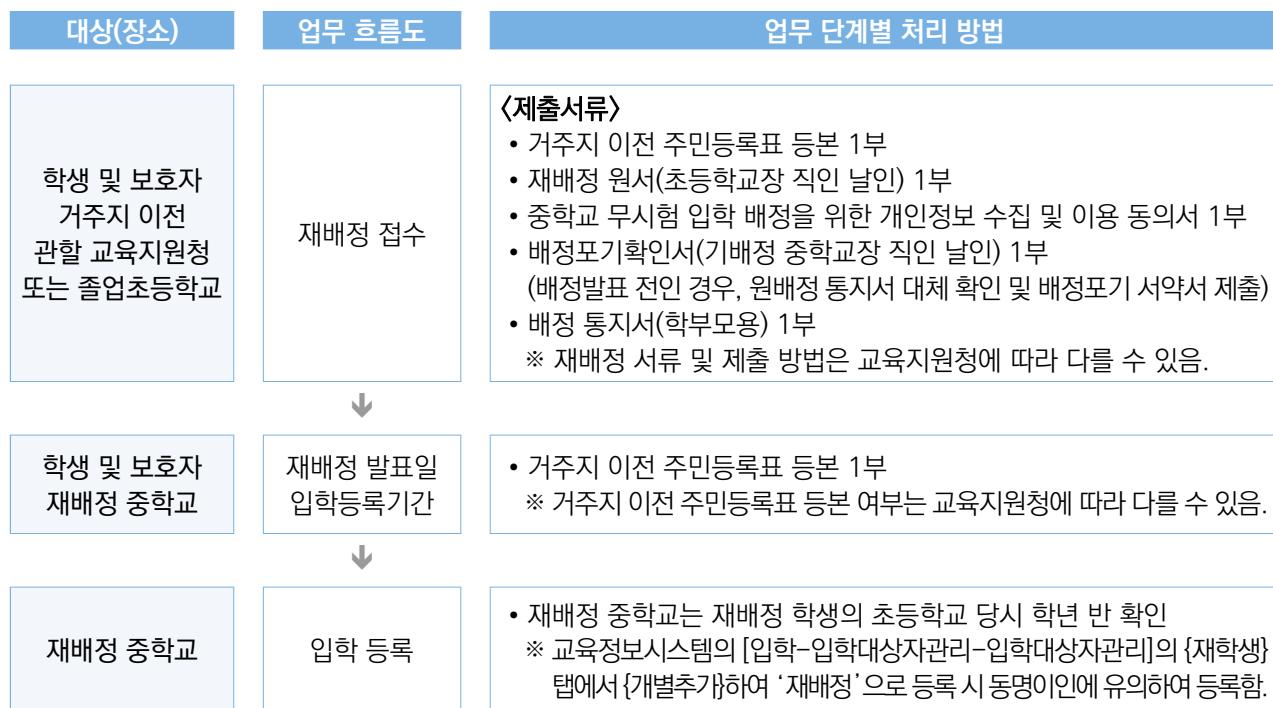
* 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귀국하여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라 거주지에 속하는 중학교(구) 중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입학을 신청함.

나. 재배정 신청 절차

1) 거주지 이전 전입자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 재외한국학교 입학 시에도 국내학교 재배정 방법과 동일함.

※ 재배정 기간 미신청 시 배정된 중학교에서 입학 처리 후 거주지 이전 중학교로 전출 처리함.

[참고] 초등학교에서 할 업무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존 배정통지서 ③ 소속 초등학교 방문	① 배정포기원 작성 → ② (관내 학군(구)간 이동) 재배정 원서 작성 ③ 배정중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정 포기 사실 전달	① 배정중학교에 배정포기서 제출 및 확인 ② 관할 교육지원청에 재배정 서류 제출

※ 중학교는 초등학교로부터 공문 접수한 관내 중학교 배정포기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입생 명단 및 학생 수를 관리함.

참고사항

※ 중학교 입학 배정·재배정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는 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 배정 계획”을 반드시 확인함.

[전출·입 관련 안내]

※ 중학교를 배정받은 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관내 타 학교군 (중학교) 또는 타 시도로 전출 후, 6개월* 이전에 동일한 학교군으로 전학을 신청하면 기배정(재배정)받은 중학교에 배정됨.

*기간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음.

4 나이스 입학 처리 절차

▶ 입학대상자 관리

- ① 교육지원청에서 신입생 배정 자료를 탑재하면 배정 결과가 일괄 등록되어 [입학-입학대상자관리]에서 조회되고, 본교로 배정된 학생의 '출신초등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및 '출신교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자료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입학대상자를 등록해야 함.
- ② 출신초등학교에서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전송을 하면, '출신교상태'가 '확인'으로 변경되고 '본교확인'란이 활성화되면서 '대상'과 '비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진로지도], [건강기록부] 마감이 되어야만 배정 결과를 전송할 수 있음.
- ③ 초등학교의 [입학-진학관리-사전일괄승인]에서 '사전일괄승인' 설정을 하고, [입학-진학관리-진학학교확인]에서 '출신교상태'가 '미확인'인 경우, 중학교에서 전송요청을 하면, 학생정보가 자동으로 중학교로 전송됨.
- ④ 본교 입학예정인 경우, '본교확인'란에 '대상'으로, 본교 입학예정이 아닌 경우(예: 전출, 배정포기자 등)은 '비대상'으로 설정한 후 저장함.
- ⑤ 누락된 학생은 개별로 추가함.

▶ 학적일괄생성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관리](중)/[입학-입학관리-입학대상자관리](고)에서 '본교확인' 상태가 '대상'인 학생에 대하여 [입학-입학대상자관리-학적일괄생성](중)/[입학-입학관리-학적일괄생성](고)에서 '입학예정 학년도', '대상자수', '학적 생성자수', '학적 미생성자수'를 확인 후 {학적생성}함.

▶ 반편성 및 진급

- ①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에서 진급 대상자생성 후 반편성 및 진급자 학적반영
※ 신입생 학적 반영일자는 3월 1일임.

3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 미입학 학생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가. 입학 기일(1일 차) ~ 입학 기일 이후 2일(3일 차)

- 1) 학교의 장은 입학하지 않은 학생 및 보호자에 유선 연락을 실시, 입학·출석 독려
※ 유선 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
- 2)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가능
※ 타 거주지로의 전출 학생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3) 학교의 장은 입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

나. 입학 기일 이후 3일(4일 차) ~ 입학 기일 이후 9일(10일 차)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학 독려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2)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내교 요청

※ 학생 및 보호자 내교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하고, 입학 독려

※ 입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은 생략 가능

3)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4) 학교의 장은 미입학 학생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게 학생 현황과 학생 관리 카드 및 집중 관리 필요 대상 여부를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함(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

다. 입학 기일 이후 10일~

1)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미입학 학생에 대해 개인별 관리 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리하여 관리(단, 학교의 장은 미입학 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 카드 작성에 적극 협조하고, 전담기구는 집중 관리 대상자 선정 시 학교장 의견을 반영)

2)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분기별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3)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참고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 신청 및 열람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담당자 내부결재
- 학교권한관리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행공) 권한 받기
- www.share.go.kr 접속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접근권한관리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 조회 → 열람권한 신청
-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 후 열람 가능: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정보열람

03

CHAPTER



전입학·전출

1. 전입학·전출

2. 교육환경 변경 전학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전입학·전출

1 용어의 정의

- 가. 전입학: 다른 학교의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나.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교 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교에 있어서는 그 중학교 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교 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교 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서 “도서·벽지”란 도서·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교를 말한다.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교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교
- ⑥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⑦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입학 및 전출 기본 사항

가. 전입학 및 전출 대상자

- 1) 일반학생: 중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다른 학교군*(중학교***)으로 이전된 자

* 학교군: 특정 지역 내 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상급 학교에 배정을 위해 복수의 학교들을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을 말함.

** 중학교: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함.

- 2) 체육특기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전학 대상자

- 3) 지체부자유자(난치병, 불치병 포함) 및 특수교육대상자

- 4) 교육환경 변경 대상자(학교장 추천자 등)

-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자

- 6) 특별법(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타법(국가유공자, 수몰주민, 군인자녀 등)에 의한 전학 대상자

나. 전학시기: 수시

※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전입 예정교에 전출교와 전입교 간의 교육과정 편제 차이, 2학기 시험 일정, 고입원서 제출시기 등을 확인한 후 전학 처리할 것

※ 중학교 3학년이 타·시도로 전출 시 전입 예정교에 전입 가능 시기를 확인할 것

다. 필요서류

- 1) 전입교 제출서류(공통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전입 예정교에서 작성, <서식7>)

나)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전출교에서 발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

라) 입학당시 3개 학년 교육과정 편제표(전학년, 비교과 포함)

마) 교과서 무상 지급 확인서(전입 예정교에 확인하여 전출교와 동일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전입 시 가져와야 함)

바) 교복 지원 확인서(1학년)

- 2)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부분전입) 또는 기타 추가서류 제출 대상자

: 전입교 관할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학 시행 지침' 참고

라. 전입학 및 전출 업무 처리 유의사항

1)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함.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함.

예시1)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예시2)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입학 및 전출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입학 및 전출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국내 원격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지역

* 전출교와 전입교의 개학일이 다른 경우 전입교는 방학 중이라도 전입학 및 전출을 처리하여 전출일과 전입일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함.

* 신입생 학적 생성일은 학년도 시작일(3.1.)로 통일하되, 대입 농어촌전형(해외특례입학, 지역인재전형)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3월 1일 동일 날짜에 전출·입 처리 가능(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669 ('24.2.21.) 참고)

- 전입교에서 3월 1일자로 전입 자료를 요청하면 전출교에는 전출일이 2월 말일로 자동 생성되므로, 전출교에서는 학적 반영 템에서 전출일자를 3월 1일로 수기로 수정하여 학적 반영한 후 전입교로 자료를 전송해야 함. (전출일에 실시한 전출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누가기록은 등록하지 않음)

2) 전입생이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 제2호, 제3호)을 받은 경우 전출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된 조치사항을 공문을 통해 전입교에 전송하고, 전입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한다.

3)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추가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부분전입 공통

- 부분전입 사유서 <서식8>

- 직장, 사업 등의 이유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 부·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서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 · 미성년후견 현재)

※ 친권자가 아닌 경우 ☎ 친권자 양육위임 동의서 <서식9> 추가 제출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학부모 확인서

※ 추가서류로 기재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학생 기준으로 상세 발급

※ 전입학 및 전출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학 시행 지침’에 따름.

3 한국학교 전입학 및 전출 처리 방법

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 및 전출의 경우 한국학교에서는 한국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학확인서를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학부모는 이를 국내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절차는 국내학교 전입학 및 전출 방법과 동일하다.

나.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절차

•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①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② 국내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의 {학적반영}탭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를 함.

③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함.

•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① 국내학교(전입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함.

② 국내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함.

③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에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전입교에 제출함.

④ 국내학교는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입력함.

※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함.

※ 교육부 인가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 국내학교에서의 전학 처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국 소재 타 학교에서의 편입학 처리와 구별해야 함.

다.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함. 다만, 동일(유사)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한국학교의 성적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는 매 학년도 발간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내 [참고자료] '재외한국학교 현황'을 참고

※ 한국학교에 따라 추가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해당 한국학교 확인 필수).

마. 한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의 전입학 및 전출은 정당한 해외 출국일 경우에만 인정함.

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 및 전출인 경우 출입국과 전입학 및 전출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3일 이내)을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4 기타 전입학 및 전출 처리 방법

가. 제주국제학교 전입학 및 전출 처리 방법

1) 국내학교에서 제주국제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 전출·입 절차는 '**③ 한국학교 전입학 및 전출 처리 방법**(22~23쪽)'에 준하여 처리함.

-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9학년에 졸업을 하므로 졸업 이전에 국내학교로 전입학 시 전입 이전학년은 수료로 등록함.

2)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 배정은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함.

- 제주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campus(KIS-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NLCS Jeju)), 브랜섬홀아시아(Branksome Hall Asia(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t. Johnsbury Academy Jeju(SJA Jeju))
-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공란으로 둠.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전입을 통해 일반학교와 제주국제학교를 거친 경우 9년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높인 경우도 인정 가능)
- ② 제주국제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전학이 가능함.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전입을 통해 일반학교와 제주국제학교를 거친 경우 12년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높인 경우도 인정 가능)
- ② 제주국제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전입학 및 전출 처리 방법

-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학 및 전출 절차는 '**③ 한국학교 전입학 및 전출 처리 방법(22~23쪽)**'에 준하여 처리함.
- 2)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 배정은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함.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 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영재학교 전입학 및 전출 처리 방법

- 1) 중학교와 학력인정 대안학교 간 이동하는 경우는 전입학 및 전출로 처리함.
※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발달상황'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성적 란에는 입력하지 않음. 단,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입력할 수 있음)
- 2) 영재학교 재학 중 영재학교가 아닌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는 전입학 및 전출로 처리하되,
전입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함.
※ '전입교'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및 자료 요청하며, 영재학교는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전출자료요청접수]에서 전출생 자료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인적·학적사항을 전송함.

라. 방송통신중학교 전입학 및 전출 처리 방법

- 1) 방송통신중학교의 전·편입학, 재취학 업무는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 학교 운영 규칙」에 따름.
※ 방송통신중학교 간의 전입학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음.

5 전입학 및 전출 시 자료 송부

- 가.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함. 이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함.
- 나. 위 ‘가’의 각종 자료는 전출 당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전입학(전출) 요청 공문’ 혹은 ‘전입학(전출)승인 공문’은 발송하지 않음.
 ※ 전출 당일 모든 자료의 전송이 어려울 경우 기본 학적 자료는 전출 당일 전송하고, 나머지 자료는 전입교와 협의를 통해 추후 전송 가능함.
- 다. 위 ‘가’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일까지 입력하지 못한 당해 학년도의 누락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전출교: 작성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자료 입력 관련 공문’을 전입교로 전송함.
- 전입교: (전출교)의 ‘자료 입력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관리함.

- ※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의 {학급별수상 관리} 탭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 라.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을 통해 전송된 자료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입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함.
- 마. 전출교의 학교폭력 전담부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대장’에 기록된 조치사항을 공문을 통해 전입교에 전송하고, 전입교의 학교폭력 전담부서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함.

유의사항

-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전출교는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의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6 전입학 및 전출 업무 처리 절차



2 교육환경 변경 전학

1 전학 대상 및 관련 법규

가. 교육환경 변경 전학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의함)

- 1)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학생 비밀전학
- 2) 학교폭력 피해학생
- 3)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학이 불가피한 학생
- 4) 기타 교육환경 변경 사유로 전학이 불가피한 학생



참고사항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

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② 읍·면·동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육환경 변경 전학 절차 및 업무 처리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Chapter 04

Chapter 05

Chapter 06

Chapter 07

Chapter 08

Chapter 09

3 교육환경 변경 전학 관련 유의사항

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취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함. 이때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加害者(친권자 포함), 성폭력加害者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 정보를 제외함.

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함.

※ 객관적인 자료의 예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 성폭력 피해 학생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교육환경 변경 전학의 상세 내용은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학 시행 지침'에 따름.

04

CHAPTER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2.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3. 유예
4. 면제
5. 정원 외 학적관리
6.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요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특수학교 포함)하여야 함.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나. 역할

- 1)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결정에 관한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면제 및 유예 결정은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침
-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그밖에 취학 의무 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읍·면·동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
※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유의함.

라.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나. 1)~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나. 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의 장이 결정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 기일 이후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마.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바.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심의 결과(승인 또는 미승인)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2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①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기일	주체	처리	서식·정보
결석당일(1일차) ~ 결석당일 이후 1일 (2일차)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함. •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보고 	
결석당일 이후 2일(3일차) ~ 결석당일 이후 4일(5일차)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또는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 가정방문 시 경찰관 동행 요청은 유선(182)으로 가능함. (교사가 신변위협·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경우 가정 방문 단계 (공문 수사의뢰 전)부터 학교장이 유선(182)으로 경찰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의심 시 112(긴급전화)) ※ 경찰이 동행하여 가정방문을 한 경우라도 학생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공문(경찰 수사 의뢰서) 발송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은 생략 가능함. • 가정방문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상담·실종신고 182로 문의 → 여성청소년과 학대 예방담당경찰관 연결 • 가정방문 시 점검표 <서식3>

기일	주체	처리	서식·정보
결석당일 이후 5일(6일차)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내교 요청 * 내교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 실시,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함. *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 기일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을 1~2일 연기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교 통지서 <서식1>
결석당일 이후 6일(7일차) ~ 결석당일 이후 8일(9일차)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고, 출석을 독려 * 면담 과정에서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 내교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의뢰 사항과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경찰 수사 의뢰 전에 학교의 장은 출국조회를 반드시 실시 * 경찰청 수사 협조 요청(수사 의뢰)은 반드시 공문으로 발송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 후 추후 공문으로 발송함. * 수사 협조 요청 시, 학교에서 확인한 내용(진행상황 및 특이 사항 등)을 기재하여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장은 행정 정보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출입국·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조회 가능 (「영 제28조의2」) • 경찰수사의뢰요청공문 <공문서식 예시1> • 경찰수사의뢰요청서 <공문서식 예시1 붙임예시> • 경찰 수사 의뢰 사실의 교육청 보고 <공문서식 예시2> • 경찰수사의뢰 결과 교육청 보고 <공문서식 예시3>
결석당일 이후 9일(10일차) ~	학교,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한 학생' 또는 '2회 이상 출석 독려를 하였으나 결석상태가 계속되는 학생'의 경우 장기결석 학생 현황과 함께 학생 관리카드에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과 집중 관리 필요 대상 여부를 작성하여 교육정보시스템으로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매달 정기적으로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교육감에게 보고(단,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장기(미인정)결석은 출결일수 기준임(주말/공휴일/방학 등은 미포함).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단, 학교의 장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 카드 작성에 적극 협조하고, 전담기구는 집중관리대상자 선정 시 학교장 의견을 반영) • 분기별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 •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복귀현황을 복귀일 이후 2일 이내에 교육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학교의 장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 	

참고사항

- ※ 행정정보 공동이용(<https://next.share.go.kr>) 시스템 접근 방법
 - 학교권한관리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행공) 권한 받기
 - www.share.go.kr 접속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접근권한관리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 조회 → 열람권한 신청
 -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 후 열람 가능: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정보열람
 - 정보열람 시 사전동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사전동의 없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조회 가능
- ※ 학교권한관리자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시스템관리}사용자-사용자관리-전체사용자관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의 '행공'에 체크 표시하여 {저장}해야 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금지(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의 처벌 가능)

2 교육정보시스템 처리 방법

- 가. [학적-미인정결석학생관리-미인정결석학생관리]에서 미인정결석 학생 정보를 등록함.
- 나. [학업중단-미인정결석학생관리-미인정결석학생관리]에서 교육장에게 보고함.
- 다. 미인정결석 학생이 복귀한 경우 기 등록된 정보에서 '복귀일자'를 등록 후 {저장}함. 이후 다시 미인정결석 대상이 된 경우 기 등록된 정보에서 {복귀후재등록}으로 초기화하여 등록함.
 - ※ 해당 학생이 전출, 유예·면제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 학적변동된 경우 '복귀일자'를 학적변동일자로 등록함.

3 | 유예

- 1 용어의 정의:**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 취학 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 절차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참고사항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1)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 (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2)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신청 대상

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를 확인함.

※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에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참조함.

다. 임신, 출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유의사항: 유예 처리 시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임신, 출산’의 직접적 기재 금지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4 신청 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5 처리 절차

순서	절차	처리자	처리 방법	관련 서류
1	유예 신청	학생의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 유예를 승인할 수 있음.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 신청서 <서식13> 유예 사유별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요청: 대안학교 취학 의무 유예 희망자 인적사항 <서식15> - 학생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서 <서식5>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4>
2	유예 결정 심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유예 결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의무의 유예는 관할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5> 신청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 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서식16>

순서	절차	처리자	처리 방법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내부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관련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6〉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 결과 보고서(기록부) 〈서식17〉
3	유예 결정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 승인(미승인) 내부결재 교육정보시스템에 유예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 따른정원외관리]에 유예 학생 등록('변동구분'을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선택) ※ 학교장은 학칙에 의해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유예일까지 수업일수에 포함 유예일 다음날부터 정원 외 학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 처리 결정 내부결재 서식 〈공문서식 예시7〉
4	유예 승인 여부 통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에게 유예 심의 결과 통지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도중 그만두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으로 처리함(대안교육 기관 재학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교육장에게 승인 명단 통보(유예 승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육장에게만 통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유예생의 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요청}으로 업무 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 완료 후 교육 지원청에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승인 통지문 발송 내부결재 서식 〈공문서식 예시10〉 유예 (미)승인 통지문 〈서식18〉, 〈서식19〉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유예 승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5	재취학 통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학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부터 유예 기간 종료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 ※ 향후 재취학 일정 등 통지·안내 ※ 유예 기간 만료, 재취학 일정, 유예 연장 희망 시 절차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학 통지서 발송 내부결재 서식 〈공문서식 예시11〉 재취학 통지서 〈서식20〉 유예 연장 신청서 〈서식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 연장 시 순서 1~4 반복 처리 (단, 교육정보시스템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한 처리 방법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부분을 참고함.

6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유예받은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5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7월 10일 유예)
특기사항	2025.07.10.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5.07.11. 정원 외 학적관리

예시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된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2월 0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2026년 02월 06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특기사항	2023.02.28. 출석일수 미달로 중학교 1학년 유급

7 교육정보시스템(NEIS) 업무 처리 방법

가.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
에서 '유예' 등록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학년도별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을 참고함.

나.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
관리]에서 유예생의 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요청}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유예 상황을
보고함.

4 면제

1 용어의 정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2 신청 대상

가. 인정유학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 출국
 -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미인정유학
 - 인정유학을 제외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되어도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거나, 수학 기간이 6개월(한 학기) 미만인 경우

나.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다. 유예 또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라. 명예졸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마.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또는 외국에서 중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 취득을 한 경우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3 신청인: 재학 중 면제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4 신청 방법: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5 처리 절차

순서	절차	처리자	처리 방법	관련 서류
1	면제 신청	학생의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신청서 <서식1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4> • 사유별 증빙서류(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관련 서류(이민비자 사본, 주택거래내역 등) *부모 해외취업 및 파견 관련 서류(발령장,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학생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서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외국 정규학교 학력 인정 관련 서류 - 사망: 사망 증빙서류(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2	면제 결정 심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면제 결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단,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면제는 관할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내부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5> • 신청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서식16>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관련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6>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 결과 보고서(기록부) <서식17>
3	면제 결정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승인(미승인) 내부결재 • 교육정보시스템에 면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면제 학생 등록('변동 구분'을 '면제'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처리 결정 내부결재 서식 <공문서식 예시9>
4	면제 승인 여부 통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에게 면제 심의 결과 통지문 등기우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가족 해외 출국 시 메일 전송 • 교육장에게 승인 명단 통보(면제 승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교육장에게만 통보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면제 학생을 등록하고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승인 통지문 발송 내부결재 서식 <공문서식 예시10> • 면제 (미)승인 통지문 <서식18>, <서식19> • 면제 승인에 대한 교육장 보고

6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5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11월 04일 면제)
특기사항	2025.11.04.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예시 질병으로 유예 후 사망하여 면제받은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3월 15일 유예)(2025년 04월 04일 면제)
특기사항	2023.03.15.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3.03.16. 정원 외 학적관리 2025.04.04. 질병으로 사망

예시 학교교육활동이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이외의 이유로 사망하여 면제받은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17일 면제)
특기사항	2025.06.17. 질병으로 사망

예시 대안교육기관 입학으로 유예 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면제받은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3월 15일 유예)(2024년 05월 20일 면제)
특기사항	2023.03.15. 대안교육기관 입학으로 인한 유예 2023.03.16. 정원 외 학적관리 2024.05.20.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후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어 면제받은 경우

학적사항	2021년 01월 08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1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1년 07월 15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2024년 12월 20일 면제)
특기사항	2021.07.15.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2024.12.20. 외국 중학교 졸업으로 면제

7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학년도별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참고

- 가. 면제 처리: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변동구분’을 ‘면제’로 등록
- 나. 교육지원청 보고: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면제 학생을 등록하고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 후 {제출}함.

5 정원 외 학적관리

- 1 용어의 정의: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2 대상

- 가.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 임신, 출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 미인정유학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
 -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생 등

3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에 대한 관리

- 가.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유예 및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
- 나. 학교장과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
※ 소재와 안전 확인은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다. 중학교의 장은 입학 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하여 재취학할 수 있도록 통지

4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절차

순서	절차	처리자	처리 방법	관련 서류
1	장기 미인정 결석 처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출석 독려)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 의사 확인 •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미인정 결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시 점검표 <서식3> • 내교통지서 <서식1> • 장기결석 학생 관리카드 <서식6>
2	정원 외 학적 관리 신청	학생의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 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의 승인 여부를 정함.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서식1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4> • 학생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서 <서식5> • 사유별 증빙서류(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학습: 학습계획서 -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재학일 경우: 재학증명서 - 미인정유학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학생 본인) 등
3	정원 외 학적 관리 결정 심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결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5> • 신청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 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서식16>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관련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6>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 결과 보고서(기록부) <서식17>

순서	절차	처리자	처리 방법	관련 서류
4	정원 외 학적 관리 결정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승인(미승인) 내부 결재 교육정보시스템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 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대상 학생 등록('변동구분'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선택) <p>* 정원 외 학적관리 시작일은 수업일수에 불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결정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8>
5	정원 외 학적 관리 승인 여부 통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에게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심의 결과 통지문 발송 교육장에게 승인 명단 통보(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승인 시) <p>*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육장에게만 통보함.</p> <p>-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을 등록하고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미)승인 통지문 발송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10>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미)승인 통지문 <서식18>, <서식19>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승인에 대한 교육장 보고
6	재취학 통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학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도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통지 ※ 통지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 ※ 재취학 일정,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 방법 등 안내 -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 시 보호자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의무 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 여부를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처리 절차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처리 절차의 2~6단계를 준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학 통지서 발송 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11> 재취학 통지서 <서식20>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 신청서 <서식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 시 순서 1~5 반복 처리(단, 교육정보시스템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음)

〈재취학 통지기일〉

-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부터 유예 기간 종료일까지
- 2) 장기결석 학생: 학년도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
 - ※ 입학 기일 등 향후 취학 일정 등 통지·안내

5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미인정유학으로 인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된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5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13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5.06.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유의사항: 변동일자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 학적특기사항에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자 및 사유 기재

6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학년도별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참고

- 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변동구분’을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로 등록
- 나. 교육지원청 보고: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을 등록하고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 후 {제출}함.

6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요약

종류	면제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국내·외국에서 중학교 졸업학력 취득	사망	외국인, 학령초과자*
요건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유예 또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재학 중 학생이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이 아닌자가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small>*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국내 학생</small>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신청서 <서식13>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학생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미제출 가능 <p>[이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 관련 서류(여권, 비자사본, 주택거래내역 등) <p>[부모 해외취업 및 파견 동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파견 관련 서류(발령장,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신청서 <서식1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신청서 <서식13> • 사망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신청서 <서식13> <p>[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권 <p>[학령초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본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5>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6> - 면제 처리 결정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공문서식 예시9>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면제 처리 -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 시 면제일까지 수업일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처리 결정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공문서식 예시9>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면제 처리 - 면제일까지 수업일수 포함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결과 보호자 통보: 면제 (미)승인 통지문 발송(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10> <서식18,19> (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보하지 않음) - 면제 승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교육정보시스템) 			
재취학 안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학교 복귀 및 처리	<p>재취학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수학기간 동안의 학력을 인정 받은 경우 면제 당시보다 차상급 학년 재취학 가능 -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면제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실시하지 않음. - 귀국자 제출 서류와 학년 배정 참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는 정원 외 학적관리하지 않음. - 면제일자 이후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면제 처리함. 			

종류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질병	대안교육기관	미인정유학	장기결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 여학생의 임신, 출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인정유학, 어학연수, 해외출국 등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결석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 가정 내 학습, 기타 당해연도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결석을 한 경우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신청서 <서식13> • 학생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서식13> • 학생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4>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대안교육기관: 취학의무 유예 희망자 인적사항 <서식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본 • 여권(비자) 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미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학습 계획서(해당자)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 증명서(해당자)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5>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6> - 유예 처리 결정 내부결재(유예일 명시) <공문서식 예시7>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유예 처리 - 유예일까지 수업일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 취학독려 지침에 따른 결석 일(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5>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1(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6>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5>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2(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6>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결정 내부결재(정원 외 학적관리일 명시) <공문서식 예시8>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수업일수는 이전일까지 포함) 	
재취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학년도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부터 유예 기간 종료일까지 - 재취학통지서발송(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11><서식20> - 유예 연장 시 절차 반복, 유예 연장신청서 <서식14> (단, 교육정보시스템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도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 재취학통지서발송(내부결재) <공문서식 예시11><서식20>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 시 절차 반복,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신청서 <서식14> (단, 교육정보시스템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음.) 	
학교 복귀 및 처리	<p>[질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학업수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내용) <p>[대안교육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따른 학기별 성적증명서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하되, 타학교급에 입급할 수 없음) - 재취학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 			<p>외국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수학 학기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결정</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일 다음날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유예 처리할 수 있음. - 정원 외 학적관리 상황부 관리(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이전일까지 미인정결석 처리함. - 정원 외 학적관리 상황부 관리(선택) 	

※ 학적 승인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교육장 보고: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국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 학업중단자(질병 또는 출국 사유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연계 희망 포함)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연계 보고: [학업중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관리-학교밖청소년연계관리및전송]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05

CHAPTER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1. 취학·재취학·편입학

2. 귀국학생 등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취학·재취학·편입학

1 용어의 정의

- 가.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나.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다.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2 취학·재취학·편입학 업무 처리

가. 취학·재취학·편입학 기본사항

1)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 의무교육대상자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으로 처리함).

예시) 1)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2) 국내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외국에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1학년까지 수료하고 2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하였다가 의무 교육 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에는 ‘입학’으로 처리함.

예시) 1) A초등학교 5학년 유예 후 B중학교 2학년 재취학(학교급을 달리하여 재취학)

2) A중학교 1학년 면제 후 A중학교 3학년 재취학(학년을 달리하여 재취학)

3) 외국인 학생이 A중학교 1학년 면제 후 A중학교 1학년 편입학(같은 학년으로 편입학)

3)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편입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편입학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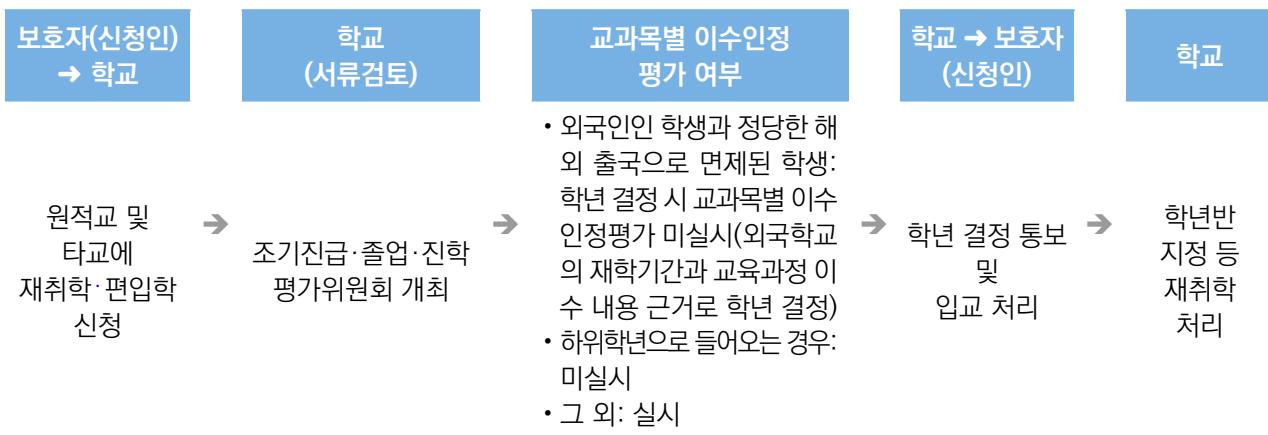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편입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가 전송됨(재취학·편입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함).

예시) 1) A중학교 1학년 유예 후 B중학교 3학년 재취학(학교를 달리하여 재취학)
2) 외국인 학생이 A중학교 1학년 면제 후 B중학교 2학년 편입학(학교를 달리하여 편입학)

참고사항 중요!

- 복수 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의무교육 대상자로 처리함(「국적법」 제11조의2).
- 초등학교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중학교 1학년으로 재취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또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의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졸업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나. 재취학·편입학 업무 처리 절차



- 중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원적교에 신청하고, 학업 중단 이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타학교로 재취학·편입학을 원할 경우 거주지 인근 중학교에 방문하여 신청함.
- 재취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67조, 제73조).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 4)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재취학할 경우, 학적 변동일 이전까지 재취학할 수 있으나 증복되지 않은 기간의 출결상황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추후 진급 시 출석일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재취학 일자를 결정하여야 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학교에서 3월 2일부터 미인정유학으로 인해 미인정결석 64일 처리 후 6월 28일에 유예된 경우, 다음학년도 6월 27일에 같은 학년으로 재취학을 하게 되면 미인정결석 63일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재취학 이후 출석일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취학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권장함.

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 유예, 면제, 유급, 조기진급 및 학교장이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함.
- ※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예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재학 당시 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08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4월 04일 유예) 2025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4.04.04. 질병으로 인한 유예 2024.04.05. 정원 외 학적관리

예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른 학교로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08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2일 유예) 2025년 03월 04일 △△중학교 제1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4.06.12. 질병으로 인한 유예 2024.06.13. 정원 외 학적관리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5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5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13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5.06.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시 수업일수와 출결일은 학적반영 이전일까지 적용되며, 학교일지는 이전일에 학적변동 학생으로 기재됨.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③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라. 재취학·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 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취학·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취학·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함.

예시) 2023.07.12.자로 ○○중학교 3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25.05.09.자로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2023.05.09.-2023.07.12.까지의 내용은 삭제함.

2023.05.09.	2023.07.12. 3학년 유예
이전내용 인정	중복기간 삭제
	새로 수행하는 사항 입력
2025.05.09. 3학년 재취학	2025.07.12.

예시) 2024.11.07.자로 ○○중학교 2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25.08.22.자로 ○○중학교 2학년으로 재취학 후 다시 2025.10.16.자로 학업중단을 한 경우에는 2024.08.22.자 이후의 내용은 삭제하되, 재취학 이후의 기간 (2025.08.22.-2025.10.16.) 동안 수행한 내용을 입력함.

2024.08.22.	2024.11.07. 2학년 유예	
이전내용 인정	중복기간 삭제	이후 내용 삭제
	새로 수행하는 사항 입력	
2025.08.22. 2학년 재취학	2025.10.16. 2학년 유예	

* 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

마.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학년도별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을 참고함.

- 1) ① 하위학교급(초등학교)에서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후 상급학교 (중학교)로 재취학·편입한 경우, ② 국내 초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후 중학교에 취학한 경우(입학일 이후 중도입학 포함) [학적-기본 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등록함.
- 2) A중학교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후 A중학교로 재취학·편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재취학(본교)·편입학(본교)로 학적 변동 당시의 학적을 불러와 학적자료를 생성함.
- 3) A중학교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후 B중학교로 재취학·편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재취학(타학교)·편입학(타학교)로 학적변동 당시의 학적을 불러와 학적자료를 생성함.

참고사항 중요!

- 중학교에서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후 다시 타 중학교로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당시의 원적교에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전송받아 학적을 구성함.
- 재취학·편입학 학교에서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적을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함 (학생의 학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재정보시스템이 운영 중임).

2 귀국학생 등

1 용어의 정의: 「귀국학생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함.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2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적(취학·재취학·편입학) 업무 처리

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적 처리 기본사항

1)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으로 함.

2)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음.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가 전송됨(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

3)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가)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취학·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4)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임.

CHAPTER 0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 5)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 6)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재취학·편입학 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나.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적 업무 처리 절차



* 정당한 해외 출국(인정유학)으로 면제 후 국내에서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1) 제출서류

- 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해외 당사국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에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함.
* 목록 위치: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나) 성적증명서
- 다)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마) 주민등록표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 사) 기타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서류 확인 필요)

● 참고사항 중요

• 제출 시 주의사항

- 1)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증명 또는 성적증명 등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해당 학교장의 직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2) 한글이나 영문 이외 언어로 작성된 외국학교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 공문서는 우리나라의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글 또는 영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3) 제출 서류의 소재국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교의 입교가 취소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2)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함.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https://www.isi.go.kr>을 참고함.
- 나)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함.
- 다)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 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1)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2)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 (3)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4) 외국 정규학교 이수 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외국 학력인정학교 확인 방법

1)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에서 확인함.
[문서명: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의 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대상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받음.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함.
-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누리집(<http://www.apostille.go.kr>)의 [정책·정보]→[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제도 소개]에서 '가입국 현황' 확인 가능함.

3)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대상
-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한 서류(학력·교육과정 인정 확인서 등)를 제출받음.
- 한국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음.

4) 위의 1~3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인쇄하여 제출 등

 참고사항

관련근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1965.1.24. 발효, 우리나라는 2007.7.14. 발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2025.3.30. 현재 129개 국가 및 지역 가입)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29)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만,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쿠아일랜드(쿠크군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1)	그루지야/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2)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32)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拉斯,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5)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튜니지, 르완다

※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Certified 5. at (④) 6. (⑤) 7. by (⑥) 8. No (⑦) 9. Seal/stamp (⑧) 10. Signature (⑨)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템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	--	--	--	--	--	--	--	--	--	--	---

3) 학력인정

가)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취학(편입학)이 가능함(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 취학(편입학)이 가능함(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학업을 중단(면제)하였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18일 면제) 2025년 09월 04일 ○○중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4.07.18.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 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으로 처리함).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19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2025년 04월 25일 ○○중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4.07.1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학년도별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참고

1) 중학교 학적이 존재하는 학생의 경우

-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재취학(본교)·편입학(본교)·편입학(타학교)의 유예·면제 당시의 학적을 불러와 학적자료를 생성함.

2) 중학교 학적이 존재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등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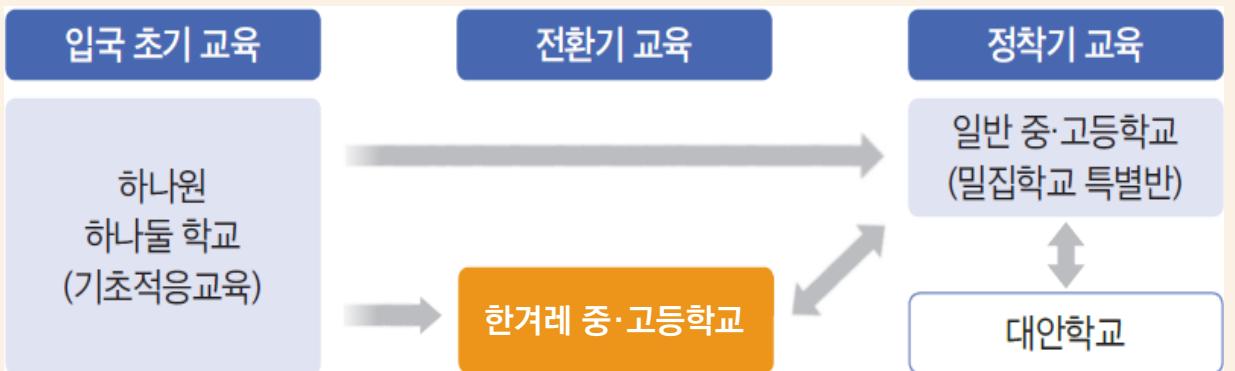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 처리

가.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 처리 기본사항

- 1)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및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심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 결정에 따라 전학 처리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적 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 2)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이 중학교에 중도 입급하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학력인정과 학적관리는 ‘탈북학생 지도교사용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2023.12.)’을 참조함(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자료실-센터발간자료).
- 가) 하나원 하나둘학교 수료 후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에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온 경우 ‘입학’으로 처리함.
- 나) 하나원 하나둘학교 수료 후 일반 중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1을 넘어서 1학년으로 들어오거나, 1학년이 아닌 학년에 들어온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 다) 하나원 하나둘학교 수료 후 한겨레중학교에 다니다가 일반중학교로 오는 경우 ‘전출·입’으로 처리함.

참고사항

북한이탈주민 중 중학교 연령 대상 학생은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재원 기간 동안 ‘하나둘학교’에서 기초 적응 교육을 받음. 전환기 교육으로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취학한 후 졸업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겨레중·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일반 중학교에 입학 또는 취학도 가능함.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참고사항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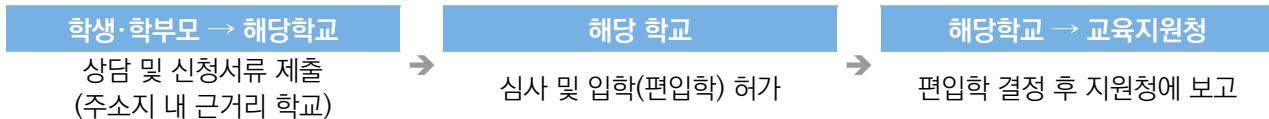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다문화 학생
 -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학교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나.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 업무 처리 절차



1) 제출서류

- 가) 특례 귀국자 편입학 배정 원서(자필 기재 후 날인)
- 나) 주민등록표등본(입국일자 이후 발부된 것)
- 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 시·군·구청장 발행)
- 라) 학력확인서(해당 시·군·구청장 발행)
- 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 시·군·구청장 발행)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권자 증명서(해당 시·군·구청장 발행)
- 바) 통장 또는 통장 사본(스쿨뱅킹용)

2) 학년 배정

- 가)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 나)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연령에는 교육 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 연령의 학년 배정 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여부도 고려함.
※ 결정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 배정할 수 없으며 낮은 학년으로 희망하는 경우 우선은 결정 학년으로 배정을 권유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년을 낮추기를 원할 때에는 1~2학년 정도 낮추어 배정할 수 있음(단, 학년이 배정되면 재학 중 다른 학년으로 재배정할 수 없으며, 나중에 자기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올라가길 원하는 경우 「경기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조기 진급을 해야 함).
- 다) 북한 이탈 학생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

CHAPTER 0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 결정'에 따라 탈북학생이 취학하는 경우, 취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4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하나원 하나둘학교를 수료한 후 경기도교육청의 학력 심의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학적사항	2025년 09월 05일 △△중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하나원 하나둘학교를 수료한 후 경기도교육청의 학력 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학년도별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참고

1) 하나원 하나둘학교 수료 후 일반 중학교로 입급하는 경우

-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등록함.

4 이주배경(다문화)학생의 학적 처리

가. 이주배경(다문화)학생의 학적 처리 기본사항

1) 이주배경(다문화)학생 주요 특성

구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국내 출생	중도입국(해외출생후)		중도입국	국내출생
배경	부모	한국인-외국인	한국인-외국인	한국인-외국인(재혼**)	외국인-외국인
	출생	한국	외국		외국
국적	내국인	내국인(결혼이후生)	외국인(결혼이전生)		
한국어역량	○ (대체로 높음)	△/× (입국시점에 따라 다름)	×	×	△ (한국어역량 보유 경우 有)
체류자격	• 내국인으로서 체류에 문제 없음		• 방문동거 비자(F-1) • 입양 시 국적 취득 • 고교까지 체류가능(체류자격 무관) • 졸업 후 유학, 취업비자가 있어야 체류가능	• 체류비자 다양*** • 비자별 체류·취업 큰 차이	
특성	• 한국인 정체성 높음 • 통합교육 선호 • 일부 다문화가정임을 노출하기 꺼리는 경향	• 생활 만족도 낮은 편 • 새로운 가족, 문화 등으로 스트레스 높음, 차별경험 높음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 • 불법체류 등 정주여건이 불안정 한 경우 있음		

[출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2025. 2., 관계부처 합동)

*재외동포(중국 동포, 고려인) 난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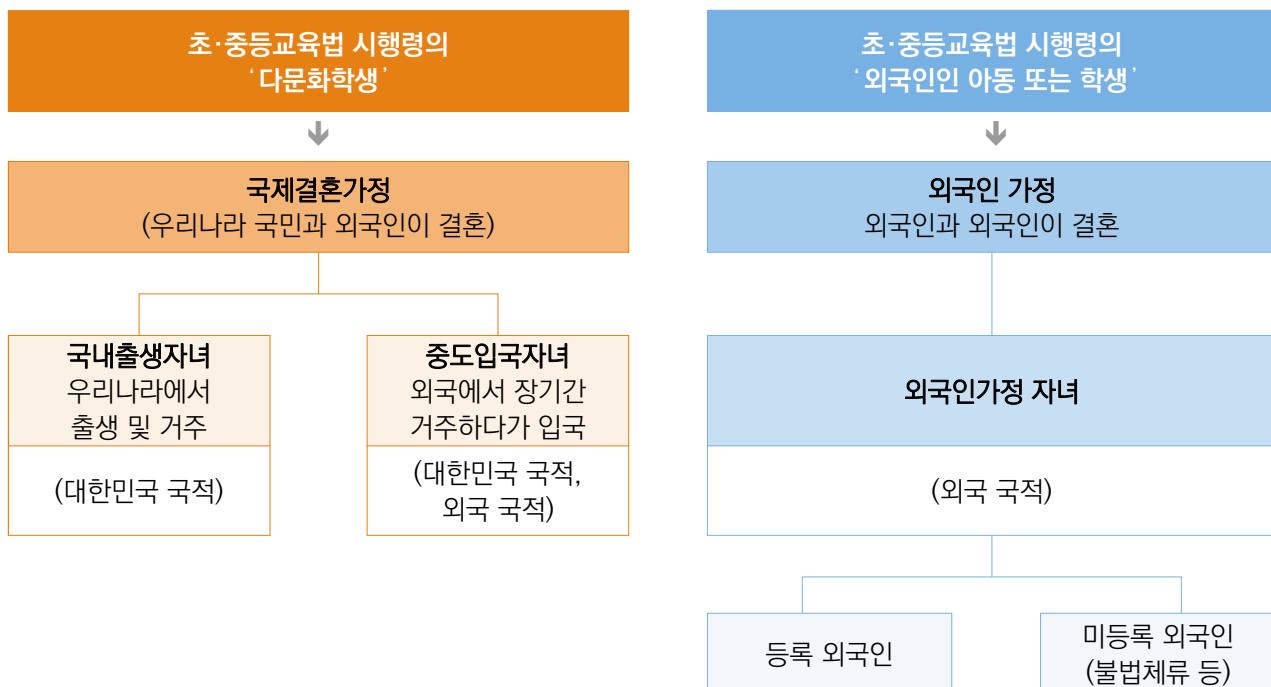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 본국에서 기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 예) 영주(F-5), 재외동포(F-4), 동반(F-3), 방문취업(H-2) 등 / 일부는 난민, 불법체류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용어 정리

- **다문화학생 (제19조, 제75조, 제98조의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 학생 (제19조, 제75조, 제98조의2)**
 - ※ 입학절차 및 관련한 외국인 학생의 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난민, 무국적, 미등록 이주아동 등을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인 아동이나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정책 용어로서의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 본 길라잡이에서는 정책 용어를 따름.

 참고사항 정책 용어와 법령상 용어의 관계



※ 외국 국적인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법령상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에 모두 포함됨.

- 2) 이주배경(다문화)가정 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의 '복수국적' 학생은 국내 학생과 동일한 학적 처리 방법과 귀국학생 학적 처리 방법을 적용함.
- 3) 외국 국적 학생(미등록, 무국적 학생 포함)은 '2023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3. 10., edu4mc.or.kr)' 와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3. 10., edu4mc.or.kr)’을 참고하여 처리함.

나.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 업무 처리 절차

1) 제출서류

가) 학력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1)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주민등록등록표 등본·초본은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3)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4)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5)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 소재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이전 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학교에서 학생의 국내 이전 학교 여부를 확인하고, 이전 학교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청함.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 (7) 기타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서류 확인 필요)
- (8) 이 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 (1)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 (2) 여권 사본 또는 출생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4) 기타 학력증빙에 준하는 관련 서류
 - ※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2) 이주배경(다문화) 학생 학적 처리 절차

입교 신청/ 입교 대상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등 외국 국적 학생			국내출생 자녀 등 대한민국 국적 학생 [원칙] 국내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학적처리/ 귀국학생 학적처리 방법 적용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군 지역	중학구 지역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거주지 인근 중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관련 서류 제출 및 편입학 신청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 보증서 등) 			



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원서 •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을 위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대상 확인(외국 소재 정규학교 확인) - 학년 결정에 필요한 서류 확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년 결정	학력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심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증빙서류에 의해 학년 결정 •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년)에 맞춰 계산 	



학적 처리/ 학생 정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적 용어 결정: (초·중학교) 취학, 입학, 편입학 (고등학교) 입학, 편입학, 재입학 • 입교 시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내부결재 • 나이스(NEIS) 학생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명은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남' 또는 '여')을 그대로 입력함.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입력함. -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 가) 학력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학력인정과 학년결정함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과 동일함).
- 나)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 (가) 심의 대상: 학령기 아동으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외국국적 학생
- (나) 심의 절차: 초등학교 학력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중·고등학교)를 통해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
※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참고사항

- 학력심의위원회는 단순 사유로 서류발급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위원회가 아닌 전쟁·난민·천재지변 등 기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력 증빙 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학생들에 한해 심의를 거치는 위원회임.
- 초등학교에 입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에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년을 배정함.
- 중·고등학교에 입급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단,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① 경기한국어랑귀지스쿨(KLS, 학교밖유형, 구 다문화 예비학교 및 구 권역별 예비학교) 입학 후 일정 시간 수업이수 (240시간 이상)
 - ② 경기한국어랑귀지스쿨(KLS, 학교밖유형, 구 다문화 예비학교 및 구 권역별 예비학교)에서 진행하는 KSL점수통과
- ※ 경기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경기한국어랑귀지스쿨(KLS, 학교밖유형, 구 다문화 예비학교 및 구 권역별 예비학교)에 안내되고 있음

다. 외국 국적 학생에 적용되는 학적 용어

- 1) 외국 국적 학생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에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온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임.
- 2) 외국 국적 학생이 처음으로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1을 넘어서 1학년으로 들어오거나, 1학년이 아닌 학년에 들어온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국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취학 또는 편입학 등** 종도 입급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

- ※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공백 없이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예시) 2019년 9월 외국 소재 초등학교 **1학년 신입학** → 2025년 8월 외국학교 12학기 이수 → **이수한 당해(2025년 9월)**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취학 가능
☞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 취학을 위해서는 외국학교에서 13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하나, 외국학교가 1학년 신입학을 9월에 실시하여 학제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한 학기가 부족하더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취학이 가능함.
단, 12학기를 이수 후 연속하여 국내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외국 국적 학생이 학교를 중단한 경우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 외국 국적 학생이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하여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 연락두절(행방불명)인 경우에는 학교장 결정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음(면제 처리하는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하지 않음).

4) 외국 국적 학생이 학교를 중단한 이후 다시 학교에 들어온 경우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에서 초·중학교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 학교를 그만 둔 후 다시 같은 학년으로 들어오는 경우

라. 외국 국적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1학년이 아닌 학년에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9월 02일 △△중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 의무교육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으로 처리함).

예시 외국인 학생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에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5월 09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예시 외국인 학생이 편입학한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9월 13일 면제) 2025년 05월 02일 △△중학교 제2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4.09.13.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예시 외국인 학생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력심의를 통해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9월 02일 △△중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마. 외국 국적 학생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학년도별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참고

1) 중학교 학적이 존재하는 학생의 경우

-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편입학(본교)·편입학(타학교)의 면제 당시의 학적을 불러와 학적자료를 생성함.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편입학의 구분

- A중학교 중단 후(면제) A중학교로 입급: 편입학(본교)
- A중학교 중단 후(면제) B중학교로 입급: 편입학(타학교)

2) 중학교 학적이 존재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등록함.

※ 전체 신입생 학적생성 이전에는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관리]의 {기타(검정고시, 직접입력)}탭에서 추가하여 ‘입학구분’을 ‘기타(학력인정)’로 선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 후 저장하여 다른 신입생과 함께 학적을 생성하고 입학처리할 수 있음.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06

CHAPTER



조기진급 및 졸업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 상급학교 조기입학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졸업·명예졸업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용어의 정의

- 가.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 나.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로 중학교 내에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음.

- 다.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라.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 내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음.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적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③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함.

• 중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학업성취도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단, 학업성취도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터)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나. 조기진급·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1) (대상자 신청)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함(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2)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음.

3)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조기진급·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졸업 인정(2월)

참고사항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에 관련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다.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1) 조기진급

가) 조기진급 처리: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
의 {조기진급자관리}에서 등록함.

나) 조기진급 환원: [학적-기본학적관리-조기진급부적응자관리]에서 {등록} 후 {승인요청}
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결 후 {학적반영}함.

2) 조기졸업

가) 조기졸업 대상자 등록: [학적-졸업처리-조기졸업자관리]에서 등록함.

※ {등록} 시 나타나는 '조기졸업자 등록'창에서 '진학학교', '비고'란은 생략할 수 있음.

나) 이후 당해학년도 졸업처리 시 조기졸업대상자도 포함되어 처리됨.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2 | 상급학교 조기입학

1 용어의 정의

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중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음.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칙개정절차
 -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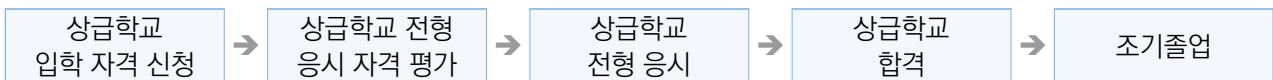
-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중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 가. (상급학교 입학 자격 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수시)
※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
- 나.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함.
- 라.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함.

참고사항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3 영재학교 입학

- 가. 영재학교 입학 자격 부여 및 영재학교 조기입학은 다음 법령에 따름.

참고사항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 ①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1 위원회 구성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함.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됨.
- 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

2 위원회의 역할

-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다. 재취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
- 라.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나.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함.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됨.

- 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다. 위원이 '나'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함.

참고사항

*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4 졸업·명예졸업

1 용어의 정의

가.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나.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2 졸업 업무 처리 절차



3 졸업 업무 처리 내용 및 방법

가. 졸업 처리 업무 개요

- 1) 개요: 졸업 대상 학생을 생성하여 졸업 처리를 하고, 졸업장 및 졸업대장을 출력함.
- 2) 업무 시기: 학년말
- 3) 선행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모든 기재사항 입력 및 확인 완료
 - 졸업 대상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검증 후 마감(결재 완료)
 - 진로지도 동의여부 마감(결재완료) 확인

나. 졸업대상자 선정: 학년말 진급/졸업사정회(평가회) 심의를 통해 졸업 대상자 선정

다. 졸업대상자 생성

라. 졸업대장번호 부여

마. 졸업장 및 졸업대장 출력

*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함(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하되, 종이출력물은 행정실로 이관함).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처리-졸업생학적반영](중)/[학적-졸업/수료관리-졸업/수료생 학적반영](고)에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를 완료함.

바. 졸업생 학적반영: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대장 번호와 졸업 학적사항 등 졸업 처리가 완료 되면 졸업생 학적반영을 실시함.

사.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1) 졸업 대상자 생성: [학적-졸업처리-졸업대상자관리]에서 졸업대상자를 생성함.
- 2) 졸업대장번호 부여: [학적-졸업처리-졸업대장번호부여]에서 '졸업대장번호부여' 방식을 학교 설정에 맞게 선택하여 {작업실행}함.
- 3) 졸업생 학적반영: [학적-졸업처리-졸업생학적반영]에서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학적반영}함.

4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5 명예졸업 업무 처리 내용 및 방법

가.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나. 심의 절차

- 1) 심의 신청: 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
 - 학생 사망 시 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면제 처리(의무교육기관)
- 3)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4)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으로 인정된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2026년 02월 05일 □□중학교 명예졸업
특기사항	2025.07.08. 학교교육활동 중 사망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학년도별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참고

- 1) 명예졸업대상자 등록 및 학적반영: [학적-명예졸업관리-명예졸업대상자관리]에서 명예졸업대상자로 등록 후 {명예졸업대장번호부여}하여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 후 {학적반영}함.
- 2) 명예졸업장 출력: [학적-명예졸업관리-명예졸업장출력]에서 당해학년도 졸업처리 (졸업대장번호 부여 완료)가 완료된 이후 출력함.

참고사항

- * 명예졸업 인정 여부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해야 함.
- * 명예졸업대장번호는 정상 졸업생의 졸업대장번호와 별도로 관리됨.

07

CHAPTER



기타(위탁교육 등)

1. 소년보호기관 위탁
2. 대안교육 위탁
3. 건강장애학생 등의 병원학교
4.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의 원격수업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소년보호기관 위탁

1 소년보호기관(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사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행원인진단, 비행예방교육, 교정교육등의 임무 수행하며, '진단기관', '교육기관', '수용·보호기관' 등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
기관의 종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타 용어의 정의	'위탁소년' 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함. '보호소년등' 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함.
학적사항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함.

가. 소년분류심사원

- 대상: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법원소년부에서 위탁된 소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
- 역할: 위탁·유치소년을 수용, 비행원인과 자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의 조사 및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자,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게 지도방향 및 처우지침 제시
- 기관현황: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개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대행
- 재적교 처리: 해당기간 출석인정 결석 처리

나. 소년원(대외명칭: ○○학교)

- 대상·역할: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

* 보호처분

비행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 교육적·인도적·복지적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소년법」 제32조제6항)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고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음.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종류	내용	출결 또는 학적처리	기간(연장)	처분 연령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위탁학생관리	6월(+6월)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출석인정 결석	1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원학교* 입교 시 재적교는 위탁학생으로 처리하고, 소년원학교는 입학 또는 전·편입학 한 것으로 처리	6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소년원학교: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 분류

▶ 초·중등교육 소년원(소년원 학교, 서울·대구·전주·안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로 특성화교과(인성교육, 컴퓨터교육)를 전체 교육시간의 50% 내외로 운영
※ 검정고시는 전국 소년원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서울·부산·대구·광주·청주·안양·춘천·제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자동차정비, 용접, 한식조리, 뷰티메디컬, 에너지설비, 골프매니지먼트 등의 과정을 운영

▶ 의료재활교육 소년원(대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에 따라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 교육

▶ 인성교육 소년원(8호 전주·청주·제주, 9호 대구·광주·청주·춘천·제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보호소년을 교육하며, 9호 처분자 대상의 단기 인성강화교육과정, 8호 처분자 대상의 특수단기 인성강화교육과정으로 구분

- 기관현황: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안양·춘천·제주 소년원(남8개, 여2개)

- 재적교 처리: 위탁학생으로 등록(초·중등교육 소년원,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의 경우에만 해당)

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외명칭: ○○청소년꿈키움센터)

- 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청소년 및 기소유예자 등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

- 기능

- ▶ 학교·검찰·법원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등 대상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 ▶ 보호처분 대상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보호처분 의견 제시 등 상담조사
-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처분 소년 등의 보호자 교육
- ▶ 초·중·고교 학생 대상 법체험, 법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 기관현황: 부산·부산동부·울산·창원·대구·광주·순천·전주·대전·천안·청주·춘천·안산·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수원·의정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재적교 처리: 출석인정 결석 처리*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교과담당교사가 [학적-출결관리-과목별출결관리-과목별출결관리(창의적체험활동제외)]에서 교사는 '/'를 표기하지 않고 비고에 '출석인정 결과'로 등록함.

2 소년원학교(서울, 대구, 전주, 안양)에서 교과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 학적사항: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함.

나. 성적: 소년원학교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 소년원학교의 2차 지필평가 시작 직전일까지 입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적교 시험 응시 및 재적교에서 성적처리함.

다. 출결상황: 소년원학교의 출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수업일수는 재적교의 수업일로 계산하여 인정

라. 비교과 영역: 소년원학교의 입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

마. 교육정보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바. 진학: 재적교에서 재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함.

※ 교육정보시스템 위탁학생 등록 시 학기 단위로 '교육구분' 설정에 '기타'로 등록함.

※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입력 시 소년원학교에 관한 내용이나 용어 입력 금지(학적사항에 소년원학교명 등)

사. 위탁 처리 절차



 참고사항 관련근거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을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소년 등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 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3 참고 자료: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업 일수 및 학적 인정, 기관별 교육과정 분류)는 매 학년도 발간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참고

2 대안교육 위탁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거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업중단 위기학생(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교 규칙 위반 등)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복귀를 지원하고자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관련 기관
-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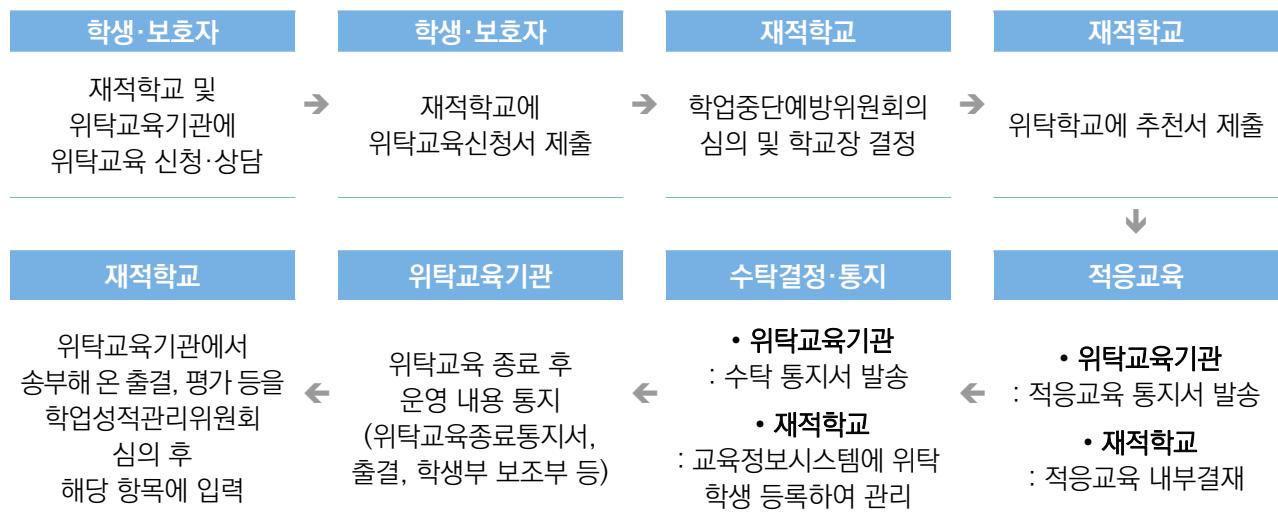
2 위탁교육 개요

- 가. 학적사항: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 나. 출결상황: 위탁교육기관의 출결을 그대로 인정함(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직교에서 출결 처리함).
- 다. 성적:
 - 성적산출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석차등급¹⁾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중)/[학적-위탁·현장실습 학생관리-자료관리](고)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
- 성적미산출 위탁교육기관: 재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결시 처리 방식은 소속교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함).
- 라. 비교과 영역: 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마. 교육정보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1) 고등학교에 한함.

3 위탁교육 처리 절차



4 위탁교육 절차 세부 내용

가. 위탁 상담

1) 재적학교

- 가) 상담 대상: 학업중단 위기학생 중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나) 상담 방법: 학생, 보호자 대면 상담 원칙

2) 위탁교육기관

- 가) 상담 대상: 위탁 신청을 한 학생, 보호자
- 나) 상담 방법: 직접 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이 원칙

나. 위탁 심의

1) 재적학교

- 가)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고 학교장이 승인하면 위탁 절차 시행
- 나)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위탁 여부를 심의
- 다) 학생과 보호자가 작성한 대안교육 위탁교육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협의록을 첨부하여 내부결재로 학교장이 승인하면 위탁 결정(해당 원본 서류는 재적학교에서 자체 보관)

라) 위탁 결정 절차

학생과 보호자 위탁 신청서 제출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협의 → 내부결재로 상신 → 학교장 승인 → 위탁교육 추천

다. 위탁 추천

1) 재적학교

가) 학생·보호자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교육기관 선정

나) 위탁교육 추천은 K-에듀파인에서 공문으로 시행함이 원칙

※ 단, 위탁교육기관이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K-에듀파인에서 공문 작성 후 팩스전송, 전자우편, 등기우편, 인편 제출 가능

- 준비서류: 대안교육 위탁 신청서, 위탁대상 학생 이해자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재적학교에서 자체 보관)
- 특별한 질환이나 병력, 학적변동 이력과 장기결석의 사유, 이전의 위탁교육 받은 이력 등을 위탁교육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보

2) 위탁교육기관

가) 재적학교로부터 공문, 대안교육 위탁 신청서, 위탁학생 이해자료 접수

나) 재적학교 및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안내

다) 위탁교육업무는 K-에듀파인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나,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은 모든 행정 처리를 공문 작성 후 인편 및 우편, 이메일 전송으로 처리

※ 위탁교육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기숙형일 경우, 결핵 검진 필수 및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입소 전 절차 준수
- 특별한 질환이나 병력, 학적변동 이력과 장기결석의 사유, 이전의 위탁교육 받은 이력 등 확인
- 서류 접검 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적학교 담임교사와 전화 상담 실시

라. 적응 교육

1) 재적학교

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적응교육 통지서를 공문으로 접수

나) 적응교육 기간은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다) 적응교육 기간의 출결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내부결재)

2) 위탁교육기관

가) 위탁교육기관 상담 후 적응교육 통지서를 재적학교에 공문으로 발송

나) 적응교육 학생의 적응 상황에 따라 재적학교와 협의에 의해 교육기간 연장 가능

다) 적응교육 결과, 수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학교에 통보하고 학생을 재적학교로 복귀 조치

라) 적응교육 기간 중 위탁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적응 프로그램 및 심층 상담 실시

마) 적응교육 기간 중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및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마. 수탁 결정·통지

1) 재적학교

- 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수탁 통지서를 공문으로 접수
- 나) 적응교육 기간 출결상황을 확인 후,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석일수에 반영 처리
- 다) 위탁학생을 교육정보시스템의 위탁학생에 등록하여 관리

2) 위탁교육기관

-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교육 상담 및 적응교육 결과를 토대로 수탁 여부를 심의
 - ※ 반드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 다) 수탁 거부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적학교에 미수탁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발송
- 라) 수탁 결정 후 수탁 통지서에 수탁 여부와 함께 적응교육 기간 중의 출결상황을 포함하여 재적학교에 공문으로 발송
- 마) 수탁이 승인된 학생의 수탁일 확정
 - 교육청 및 재적학교에 통보하는 위탁일은 적응교육을 마친 다음 날을 수탁일로 지정하여 통보

바. 참고 자료: 관련 자료 및 서식은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학교용)> 참고

3 건강장애학생 등의 병원학교

1 병원학교: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말함.

참고사항

※ 전국병원학교(<https://hospital.s4u.kr/>)

※ 경기도교육청 병원학교: 5개

순	병원학교명	운영교	학급수	질환	비고
1	국립암센터 (고양시)	풍산초병설유치원	1	혈액·종양(소아암) 등	건강장애
		풍산초등학교	1	혈액·종양(소아암) 등	
2	파주시티 재활요양병원 (파주시)	자운학교(유)	1	소아재활	중도중복
		자운학교(초)	1	소아재활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양시)	금계초병설유치원	1	소아재활	중도중복
		금계초등학교	1	소아재활	
4	한서중앙병원 (의정부시)	송민학교(초)	1	정신건강의학	중도중복 (정서·심리)
		송민학교(중고)	1	정신건강의학	
5	고려대안산병원 (안산시)	고잔초등학교	1	정신건강의학	중도중복 (정서·심리)

2 지원 대상

가. 건강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 1)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 2) 연간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 3)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건강장애학생 선정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이 가능하고,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장애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님(ADHD,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에 입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원격수업지원 대상은 아님)

3 신청 절차

가. 소아청소년암 대상 병원학교

질병 발생·의료진 검진 및 진단 → 건강장애 선정·배치 신청 → 건강장애 선정(소속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입교 신청서 및 공문 발송(소속학교→병원학교) → 병원학교에서 승인 및 소속학교로 통보 → 입교 완료(위탁학생, 출석인정) → 출석 통보(병원학교→소속학교)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대상 병원학교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중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 해당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입원 결정 → 보호자가 소속학교에 신청(입원사실 확인서 또는 치료기간이 병시된 진단서, 병원학교 입교 관련 서류) → 원적학교장 승인 후 입교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병원학교로 입교 신청 → 병원학교에서 승인 및 소속학교로 통보 → 병원학교 입교(위탁학생, 출석인정) → 출석 통보(병원학교 → 소속학교)

4 참고 자료: 관련 자료 및 서식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 참고

4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의 원격수업

1 원격수업: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송·정보통신매체 이용 교육을 말함.

참고사항

* 원격수업 위탁기관 현황

기관명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https://www.s4u.kr	1544-1640
(사)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https://www.nanura.org	055-266-4416

2 지원 대상

가. 건강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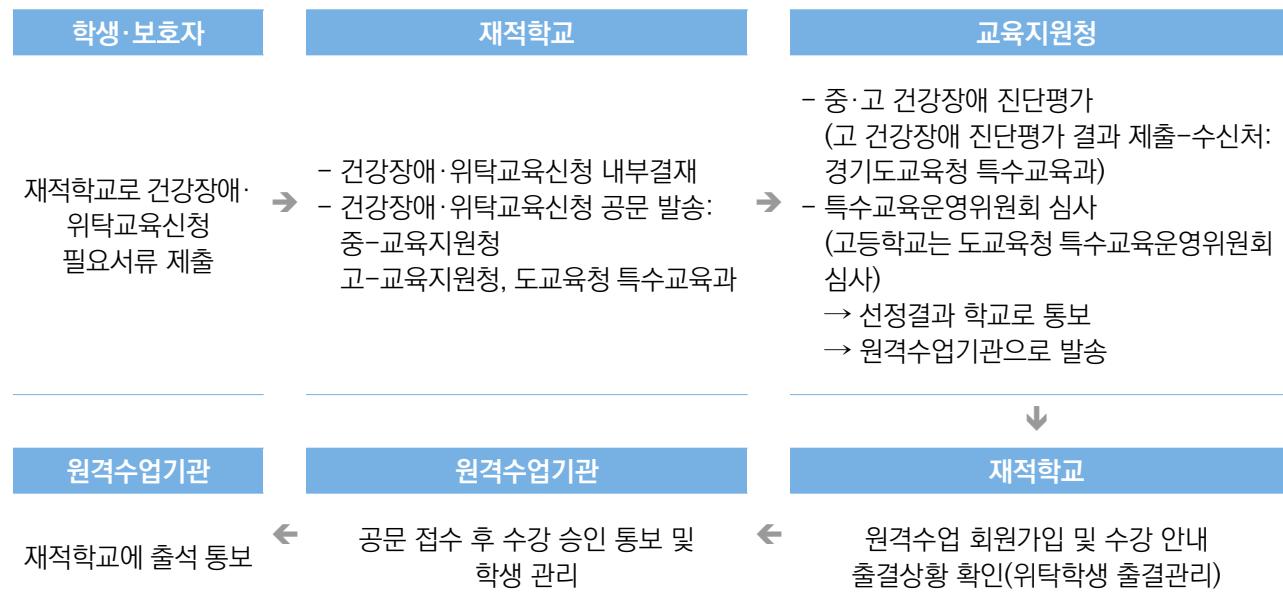
- 1)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 2) 연간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 3)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나. 요보호 대상자: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3개월 이상)이 예상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님에 유의함.

다. 공통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만성질환으로 장기결석이 불가피하여 원격 수업 수강을 교육청이 허가한 경우

3 신청 절차



4 참고 자료: 관련 자료 및 서식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08

CHAPTER



고등학교 주요 학적

1. 휴학, 복학
2. 자퇴, 퇴학, 제적
3. 재입학, 편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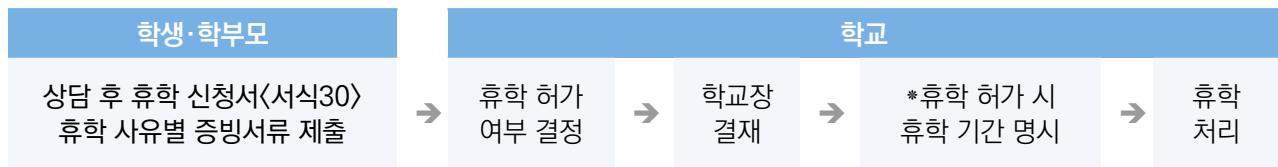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휴학, 복학

1 휴학: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신청 불가)

* 해외 유학, 해외 어학연수, 학원 수강, 범법행위로 인한 교도소 수감 등은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음.

가. 처리 절차



나. 제출 서류

- 1) 휴학원 1부
- 2) 휴학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 등 기록)
 - 병역관련 서류

다. 유의 사항

- 1) 휴학 허가 시 휴학 기간 명시해야 함
 - 매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단, 병역 등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 휴학으로 인한 정원 보충은 불가함.
 - ▶ 휴학자는 정원 내 인원으로 포함함.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 선행 처리: 학적반영일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모든 항목 입력 내용을 확인함.

- 1)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휴학생을 {추가}하여 학교 생활기록부 생성(학적사항 등록 및 출결상황 출결내역 반영) 후 {승인요청}으로 업무 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하고 {학적반영}함.
 - * 2025학년도 1학년부터 2차 지필평가 이후 휴학 처리가 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 성적이 반영됨.
 - 휴학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학적변동일자에 맞춰 학적반영을 먼저 수행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처리가 완료되면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

관리]에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성적학생부반영}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 성적을 반영함.

* 휴학한 자가 복학으로 학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를 제18조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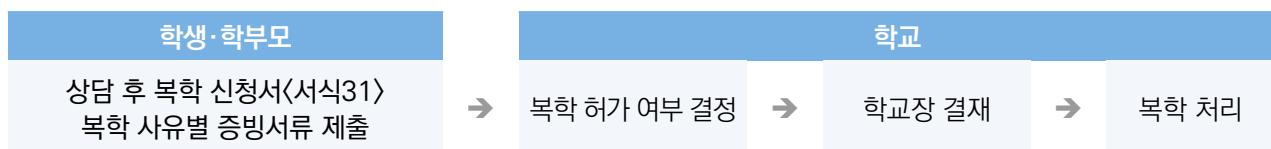
마.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1월 10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5년 03월 01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19일 휴학)
특기사항	2025.06.19. 질병치료로 휴학

② 복학: 휴학 기간의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로 돌아옴.

가. 처리 절차



나. 제출 서류

- 1) 복학원 1부
- 2) 휴학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3) 기타 학교장이 정한 서류

다. 유의사항

- 1)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복학해야 함.
- 2)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년도 학기초부터 그 전학년도 휴학 시작일 전까지 가능함.
예) 2025. 5. 30. 휴학 처리된 학생의 경우, 복학 시기는 2026. 3. 1.부터 2026. 5. 29.까지 가능함.
* 휴학 기간 종료 전이라도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장 판단하에 복학 가능함.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과 해당 학기 성적 산출이 되어야 함을 말함.
- 3) 해당 학교에서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복교를 안내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때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게 복교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또는 퇴학 처분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인정하는 휴학 사유가 지속될 때는 휴학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휴학 서류를 제출받아 다시 휴학 처리를 할 수 있음(나이스에서 복학 처리를 수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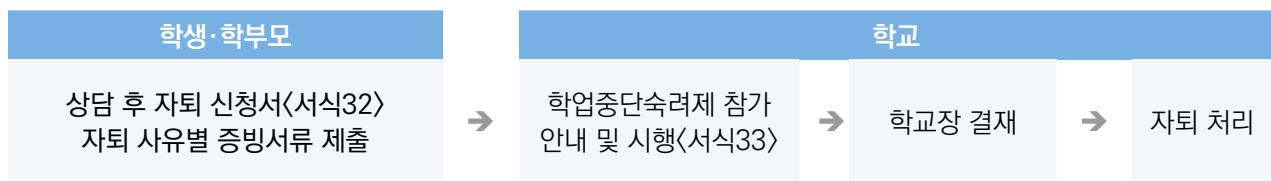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1) [학적-전입관리-전편재입/복학생등록]에서 복학생을 {등록}함.
- 2) [학적-전입관리-상신]에서 {상신}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함.
- 3) [학적-전입관리-학적반영]에서 해당 복학생을 {학적반영}함.

2 자퇴, 퇴학, 제적

- 1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가. 처리 절차



나. 제출 서류

- 1) 자퇴원 1부
-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법정의무사항) 1부
- 3) 기타 학교장이 정한 서류

다. 유의사항: 자퇴 허가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단, 참여 여부는 학생과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음).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 **선행 처리:** 학적반영일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각종 자료를 나이스에 입력·확인함.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고등학교 과목별 출결현황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일상생활 활동상황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1)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자퇴생을 {추가}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생성(학적사항 등록 및 출결상황 출결내역 반영) 후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하고 {학적반영}함.

※ 2025학년도 1학년부터 2차 지필평가 이후 자퇴 처리가 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 성적이 반영됨.

- 자퇴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학적변동일자에 맞춰 학적반영을 먼저 수행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처리가 완료되면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 관리]에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성적학생부반영}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교 과학습발달상황 과목 성적을 반영함.

※ 자퇴한 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으로 학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 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를 제18조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질병으로 휴학 후 자퇴한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1월 10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4일 휴학)(2025년 04월 08일 자퇴)
특기사항	2024.06.14. 질병치료로 휴학 2025.04.08. 가정 사정으로 자퇴

※ 휴학 후 학생이 자퇴(사망)한 경우에는 복학 처리하지 않고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휴학생을 추가하여 자퇴(제적, 명예졸업) 처리함.

참고사항

검정고시를 위한 자퇴	검정고시는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고,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자퇴를 해야 응시가 가능함. 예시 2025.02.04. 시험 공고일 일 경우 2024.08.04. 자퇴자까지 응시 가능 2025.06.11. 시험 공고일 일 경우 2024.12.11. 자퇴자까지 응시 가능
신입학을 위한 자퇴	1학년 재학중 다음 해 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학교 원서 작성 기간(보통 12월 초)에 졸업한 중학교에 원서 접수로 입학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자퇴를 해야 함(단, 원적교로 다시 돌아 오는 경우 재입학에 해당하므로 재입학 절차 참고).

②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가. 처리 절차



나. 구비 서류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1부
- 2) 퇴학 처분 관련 내부결재 1부
-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법정의무사항) 1부
- 4) 기타 학교장이 정한 서류

다. 유의사항

- ▶ 퇴학 처분 대상 학생의 지도 의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7항
 - 1)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단, 해당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함).
 - 2)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3) 퇴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 **선행 처리:** 학적반영일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각종 자료를 나이스에 입력·확인함.
 -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고등학교 과목별 출결현황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일상생활 활동상황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1)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퇴학생을 {추가}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생성(학적사항 등록 및 출결상황 출결내역 반영) 후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하고 {학적반영}함.
 - * 2025학년도 1학년부터 2차 지필평가 이후 퇴학 처리가 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 성적이 반영됨.
- 퇴학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학적변동일자에 맞춰 학적반영을 먼저 수행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처리가 완료되면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 관리]에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성적학생부반영}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 성적을 반영함.
 - * 퇴학한 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으로 학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 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를 제18조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함.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마.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퇴학 처리된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1월 10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5년 03월 01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20일 퇴학)
특기사항	

※ 2025학년도 1·2학년인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으로 퇴학 처분 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등록함.

※ 2025학년도 3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특기사항에 등록함.

예시) 2025.06.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

자퇴 · 퇴학 시 유의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고지 안내 후 연계(법정의무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외 대상 학생(질병, 해외출국 학생)이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연계함.
- 학업중단자 현황: 학업중단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에 정보 연계
 - [학업중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관리-학교밖청소년연계관리및전송]에서 해당학생을 등록하고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 후 {여성가족부전송및제출}함.
 - 제외 대상 학생(질병, 해외출국 학생)이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학업중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관리-학교밖청소년연계 관리및전송]에 등록하지 않음.
-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해당학생을 등록하고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 재입학, 편입학 등으로 학교로 복귀할 때 복귀 처리함.
- 상담교사 – 학적 담당 – 담임교사 간의 처리과정 공유(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③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가. 처리 절차



* 통보 방법은 학교장이 정함.

나. 구비 서류

- 1) 제적 사유를 증빙할 서류(사망진단서 등)

다.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선행 처리:** 학적반영일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각종 자료를 나이스에 입력·확인함.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고등학교 과목별 출결현황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일상생활 활동상황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1)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제적생을 {추가}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생성(학적사항 등록 및 출결상황 출결내역 반영) 후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하고 {학적반영}함.

※ 2025학년도 1학년부터 2차 지필평가 이후 제적 처리가 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 성적이 반영됨.

- 제적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학적변동일자에 맞춰 학적반영을 먼저 수행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처리가 완료되면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 관리]에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성적학생부반영}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교 과학습발달상황 과목 성적을 반영함.

라.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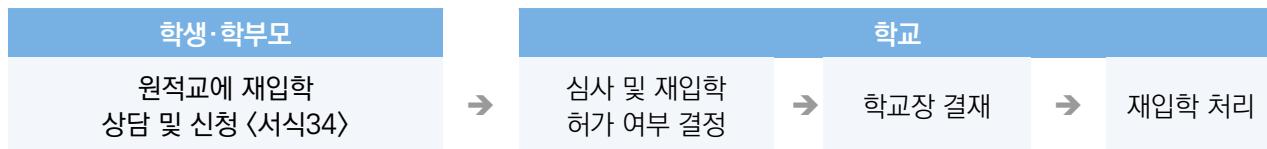
예시 사망으로 인해 제적 처리된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1월 10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5년 03월 01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6월 17일 제적)
특기사항	2025.06.17. 질병으로 사망

3 재입학, 편입학

1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가. 처리 절차



나. 제출 서류: 재입학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다. 유의 사항

1) 입학시기는 학업중단한 다음학년도 시작일부터 학업중단일 이전에 재입학하는 것이 원칙

*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장 판단하에 재입학 가능함.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과 해당 학기 성적 산출이 되어야 함을 말함.

2) 재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 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재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함.

* 재입학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1) [학적-전입관리-전편재입/복학생등록]에서 재입학생을 {등록}함.

2) [학적-전입관리-상신]에서 {상신}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함.

3) [학적-전입관리-학적반영]에서 해당 재입학생을 {학적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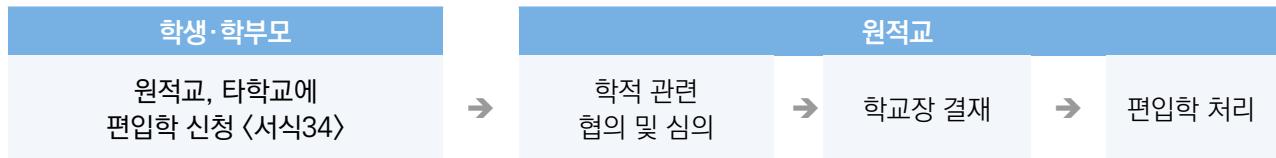
마.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재학 당시 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4월 18일 자퇴) 2025년 03월 04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재입학
특기사항	2024.04.18. 가정 사정으로 자퇴

2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함.

가. 처리 절차



나. 제출 서류: 편입학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다. 유의 사항

- 1) 자퇴 후 당해 학년도에 타학교로 편입학 시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장 판단하에 편입학 가능함.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과 해당 학기 성적 산출이 되어야 함을 말함.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 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함.

※ 편입학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

라.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방법

- 1) [학적-전입관리-전편재입/복학생등록]에서 편입학생을 {등록}함.
- 2) [학적-전입관리-상신]에서 {상신}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함.
- 3) [학적-전입관리-학적반영]에서 해당 편입학생을 {학적반영}함.

마.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 입력

예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타학교로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3일 자퇴) 2025년 03월 04일 △△고등학교 제1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4.06.13.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자퇴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학적처리 주요 용어

구분	초		중		고	비고	
	대한민국 국적 학생	외국 국적 학생	대한민국 국적 학생	외국 국적 학생			
신입학	*입학 - 초등학교 졸업 학생 -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학생(대한민국 국적 학생) - 외국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학생	*입학 - 국내 초등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고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6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입학 - 국내 초·중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고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3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재취학 - 국내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6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입학 - 초등학교 졸업 학생 - 외국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학생	*입학 - 중학교 졸업 학생 -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학생(대한민국 국적 학생) - 외국에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학생	*입학 - 중학교 졸업 학생 -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학생(대한민국 국적 학생) - 외국에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학생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
학기 중 입급	*취학 - 국내 초등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고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6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재취학 - 국내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6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취학 - 국내 초등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고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3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편입학 - 국내 초등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고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6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취학 - 국내 초·중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고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3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재취학 - 국내 초·중학교에 다니다가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3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취학 - 국내 초·중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고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3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편입학 - 국내 초·중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고 수업일수 3분의 2초과하여 1학년으로 입급하거나 2~3학년으로 학기 중 입급	*취학 - 외국인 학생이 학력인정 및 학력심의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경우(1학년 신입학 이외)	*취학, 재취학: 대한민국 국적 학생 *취학, 편입학: 외국 국적 학생 -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학업 중단 시	*면제 -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학령초과자)가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유예 또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 - 학생 사망(명예졸업 이외) *유예 - 재학 중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비고 참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여학생의 임신, 출산)가 있는 경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장기결석은 미인정유학,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학교생활부적응, 가정 내 학습 등의 미인정결석에 한함.	*면제 -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생 사망(명예졸업 이외)	*면제 -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학령초과자)가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유예 또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 - 학생 사망(명예졸업 이외) *유예 - 재학 중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비고 참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여학생의 임신, 출산)가 있는 경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장기결석은 미인정유학,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학교생활부적응, 가정 내 학습 등의 미인정결석에 한함.	*면제 -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생 사망(명예졸업 이외)	*휴학 -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퇴학 징계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제적 학생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은 의무관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체 처리 가능함. [재학 중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감염병(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중단 후 다시 입급	*재취학 - 의무교육 중단자(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대한민국 국적의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편입학 - 대한민국 국적과 복수국적 이 아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 국적의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재취학 - 의무교육 중단자(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대한민국 국적의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편입학 - 대한민국 국적과 복수국적 이 아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 국적의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재입학 - A학교 → A학교(동일 또는 아래 학년) *편입학 - A학교 → A학교(차상급 학년) - A학교 → B학교(학년에 관계 없이 타학교)		

*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적 용어도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적 용어를 사용함.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학적처리함.

*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음(북한 지역 전역은 대한민국 영토임).

* 외국인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 시 학년 배정은 학력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 학업수행능력, 한국어의사소통능력, 나이, 정서적 상태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학년 배정을 할 수 있음.

- 낮은 학년으로 배정 시 외국인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함.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09

CHAPTER



부록

1. 중등 학적 Q&A 사례집

2. 관련 서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중등 학적



사례집



일러두기

- 이 중등 학적 Q&A 사례집(이하 “사례집”)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에서의 학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학적 관련 지침, 학교 현장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집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훈령에서 규정한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학적 영역), 경기도 2025 중등 학적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요 학적 업무 처리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학적 민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민원 응대를 확보하고 교육 신뢰도 제고·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 사례집 구성은 경기도 2025 중등 학적 길라잡이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및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학적 관련 공문 안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 사례집에 사용하는 ‘입급’은 학교에 들어오게 됨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방법은 입학, 취학, 편입학, 재입학 등 다양합니다.
- 이 사례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5에 의한 것으로 ‘나이스’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 이 사례집에 제시된 일자 표기 방식 등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문의 방법

단위학교 내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등 학적 길라잡이, 학칙에 따라 학적 업무를 처리하되, 도움이 필요할 경우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부득이하게 상세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문의함.

[문의 방법]

- 학교에서
 -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질의함.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단위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 교육지원청에서
 - 단위학교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답변함.
- 교육청에서
 - 교육지원청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 자체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교육부 해당부서에 문의함.
 -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함.

[유의사항]

- 이 사례집에는 다양한 교육정책(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질의함.





CONTENTS

① 법적 근거 및 용어	121
② 배정·입학관리(취학의 독려 및 독촉)	127
③ 전입학·전출	134
④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143
⑤ 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156
⑥ 조기진급 및 졸업	174
⑦ 기타(위탁교육 등)	176
⑧ 고등학교 주요 학적처리 관련(자퇴, 퇴학, 휴학 등)	180

1 법적 근거 및 용어

1.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시행 2024. 4. 25.)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44호, 시행 2024. 11. 14.)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11호, 시행 2025. 2. 28.)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6조(읍·면·동의 장 및 교육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제27조(취학독려조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30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313호)

제5조(자비유학자격)

6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51호)

제1조(목적),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7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제2조(정의)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6호)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87호)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2. 용어 및 해설

1 의무교육: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2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재취학, 취학 포함)는 입학으로 처리함.
-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3 입학기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의 장이 정한 날.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함.

4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예시)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5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6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자퇴 이후 재입학 시기는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시점 전일까지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7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 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
- 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자가 재취학할 때 가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음.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관련자료가 전송됨(재취학 학교에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함).

8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9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10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11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2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음.
- 조기진급 절차 및 방법
 - 1) 조기진급 신청(학생, 학부모) →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 평가 → 조기진급 인정 결정
 - 2)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의 {조기진급자관리} 탭에서 조기진급대상자로 등록함.
 - 3) 조기진급에 관련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함.
- 조기진급 사실 기재 내용 추가(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3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4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 1)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결석일수에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을 포함함.
 - 2)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의 {유급자관리} 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 3)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15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6 면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17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8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유예자가 발생한 경우 중학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19 정원 외 학적관리: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대상자로 결정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은 미인정결석에 한함.
- 보호자(학생)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신청하여 학교에서 승인한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20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1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2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3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재취학한 학생은 면제, 유예의 학적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의 이전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24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고교학점제 적용 학년(2027학년도 졸업생)은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 가능함.

25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음.
-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 1) 조기졸업 신청(학생, 학부모) → 대상자 선정 → 조기졸업 평가 → 조기졸업 인정 결정
 - 2) [학적·졸업처리·조기졸업자관리]에서 조기졸업자를 등록함.
 - 3) 조기졸업에 관련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음.

26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 1)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2)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27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귀국 후 재취학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정규교육기관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인정 유학
 - 인정유학을 제외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함.
 - 귀국 후 재취학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외 정규교육기관 재학 기간을 반영하여 학년을 배정함.

2 배정·입학관리(취학의 독려 및 독촉)

Q1 중학교 입학 배정·재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각 지역별로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입학을 희망하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중학교 입학 배정 계획'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업무 담당 부서(주로 학생배치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Q2 중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은 학생이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려고 하는데, 중학교 입학 배정을 포기할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입학 배정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배정된 중학교로 입학해야 합니다.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재학) 해당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미인정결석) 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재학)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배정된 중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이 신청하여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항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업무담당 부서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절차]

가. 입학기일(1일차) ~ 입학기일 이후 2일(3일차)

1) 학교의 장은 입학하지 않은 학생 및 보호자에 **유선연락**을 실시, 입학·출석 독려
 ※ 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가능**
 ※ 타거주지로의 전출 학생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3) 학교의 장은 입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

나. 입학기일 이후 3일(4일차) ~ 입학기일 이후 9일(10일차)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학 독려

-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 2)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내교 요청**
- 학생 및 보호자 내교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하고, 입학 독려
※ 입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은 생략가능
- 3)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4) 학교의 장은 미입학 학생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게 학생 현황과 학생 관리카드 및 집중관리 필요 대상 여부를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함(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
- 다. 입학기일 이후 10일 ~
- 1)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미입학 학생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단, 학교의 장은 미입학 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에 적극 협조하고, 전담기구는 집중관리대상자 선정시 학교장 의견을 반영)
 - 2)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분기별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3)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중학교입학주체관리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2025년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Q3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일 이전에 면제 신청을 할 경우 의무 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기와 면제 처리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 A 면제 처리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기는 당해 학년도 3월 1일 이후이며, 면제 처리 기준일은 3월 1일로 합니다.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수업일수는 ‘·’으로 표기 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4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지역의 인근 중학교에 3월 2일자로 입학할 수 있나요?

A 이사 온 지역의 재배정 기간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배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규정에 따라 전출·입을 신청합니다. 최초 배정된 중학교로 입학 후 입학일에 거주지 관할 학군의 중학교로 전출·입 가능하며, 이 경우 학년초 전출·입교 간 원활한 연락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배정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입학 전에 재배정을 신청합니다.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내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3. 전입학·전출

Q5 중학교 입학등록일(신입생 예비 소집일)과 입학일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며, 학생의 보호자에게 추가 입학등록일을 통지하고, 추가 입학등록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3월 1일 이후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경찰 협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서에 안내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 현황 및 최종 입학등록 결과는 관내 교육장에게 일일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화번호의 오류 등으로 유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출신 초등학교에 요청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음.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2025년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Q6 국내의 초등학교를 졸업 후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재외한국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출국 예정은 2월인데, 진학할 재외한국학교 1학년 입학은 4월입니다. 배정받은 국내 중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학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 가족이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에 해당하므로, 대상 학생은 재배정 대상자입니다. 배정받은 중학교에 배정포기서를 제출하고, 해당 재외한국학교에서 입학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배정·재배정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배정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7~58쪽

Q7 입학일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됩니다. 사전동의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나요?

A 입학일~입학일 이후 2일(3일차)까지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미취학 아동·미인정결석 학생 소재지 조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 신청 및 열람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담당자 내부결재
- 학교권한관리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행공) 권한 받기
- www.share.go.kr 접속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접근권한관리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 조회 → 열람권한 신청(PDF, 한글, 이미지 파일 형식의 내부결재 공문 파일 첨부)
-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 후 열람 가능: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정보열람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지 않음. 다만, 사전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사무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2025년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고등학교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기준(고등학교)

Q8 취학일(입학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소재확인이 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 결과 출국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출국이 확인된 경우 가정방문은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 자원, SNS를 활용하여 해당 학생의 소재·안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하여 입학일에 면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해야 하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 규칙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교육부)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고등학교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기준(고등학교)

Q9 미인정결석의 종류와 장기 미인정결석의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A 미인정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장기(미인정)결석 아동·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대상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교육장에 보고하는 장기 미인정결석 대상자 기준일은 초·중학교 10일, 고등학교 7일입니다.

참고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교육부)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고등학교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기준(고등학교)

Q10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처리 후, 가정 내 사정·학생의 정서불안·치안문제 등의 사유로 귀국(재취학) 하였을 때 교육정보시스템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 관리]에서 '복귀여부'를 'N'에서 'Y'로 변경하여 재보고하면 됩니다. 해당 보고 방법은 지역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역 교육지원청 학적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

나이스광장 사용자지원서비스-자료광장-사용자설명서-(학업중단) 나이스 학업중단 학교 사용자설명서 (2024.09.26.)

Q11 1학년 신입생 중에 인적·학적사항의 학적사항에 입학 전 전적교의 졸업년월일과 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A 인적·학적사항의 학적사항란에 입학 전 전적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여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 전 전적교의 졸업사실이 없어서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이 기재되지 않으니 그대로 두면 됩니다.

- 1) 초·중학교에서 학업중단(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되었다가 초·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2) '귀국학생 등'이 외국 정규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아 중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 3) 학력증빙이 곤란한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력심의를 통해 들어온 경우
- 4)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이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심의를 받아 들어온 경우

다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검정고시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 합격 내용을 입력하되, 중학교 입학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9~62쪽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347~348쪽

Q12 외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수료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이 중학교 1학년으로 입급하려고 합니다. 이미 10월이기 때문에 당해 학년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이 아닙니다. 이때 중학교 1학년으로 입급 시 처리하는 학적 용어는 무엇이며, 입급 후 50일 정도 출석하는 경우 중학교 2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A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려고 하며 당해 학년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취학'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은 '귀국학생 등'에 해당되므로 입급일로부터 출석일수가 3분의 2이상 이라면 진급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입학: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재취학, 취학 포함)는 입학으로 처리함.
- 취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 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귀국학생(외국인)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임.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54~55쪽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347쪽

Q13 외국인 학생이 국내 학교에 취학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외국인 학생이 국내 학교에 취학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상기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 취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3. 학년결정에 필요한 서류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참고

2022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 10~11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3 | 전입학·전출

Q1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지역의 인근 중학교에 3월 2일자로 입학할 수 있나요?

A 이사 간 지역의 재배정 기간(1월 중)이 종료된 경우, 관할 교육지역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규정에 따라 전출·입을 신청합니다. 최초 배정된 중학교로 입학 후 입학일에 거주지 관할 학군의 중학교로 전출·입 가능하며, 이 경우 학년초 전출·입교 간 원활한 연락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내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3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3. 전입학·전출

Q2 진급과 입학이 3월 1일자로 시작하는데 재학생과 신입생의 전입·전출일자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므로 전입일이 3월 4일이라면 전출일은 3월 3일로 처리합니다.

💡 참고사항

대입 농어촌전형(해외특례입학, 지역인재전형)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3월 1일 동일 날짜에 전출·입 처리 가능* → 전출일이 2월 28(29)일로 자동 설정될 경우 수기 수정을 통하여 3월 1일로 설정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669(2024. 2. 21.) 참고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 53쪽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232쪽

Q3 전출일과 전입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전출·전입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합니다.
전출교와 전입교의 개학일이 다른 경우 전입교는 방학 중이라도 전입학을 처리하여 전출일과 전입일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쪽

Q4 도서벽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의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의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공백일 1일의 인정이라는 것은 출결처리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출결처리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A 수업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수업일수 만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출입일자 사이에 해당 수업일수 만큼 공백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전입일이 8월 29일(금)의 경우, 도서벽지일 경우 1일의 공백을 두어 전출일은 8월 27일(수), 국외 원격지의 경우 3일의 공백을 주어 전출일은 8월 25일(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쪽

Q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에서 「국내 원격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국내 원격지인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고 2023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 회신 사례집 12쪽

Q6 전출일과 전입일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쪽

Q7 전입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전입교와 전출교 중 어디서 정정해야 하나요?

A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9쪽, 40쪽(하단 유의사항 참고)

Q8 전입생의 학년에 대한 반을 잘못 입력하여 학적반영을 했을 경우 반 수정이 가능할까요?

A [나이스-학적-기본학적관리-반변경]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304쪽

Q9 전출교에서 누락자료를 입력하여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고 자료 이관을 요청하였을 경우, 전입교도 학적 반영취소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 자료이관을 받아야 하나요? 자료이관을 받을 경우 전입교에서 입력한 자료는 삭제가 되나요?

A 전출교에서 학적반영을 기결취소해서 누락된 자료를 입력하고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전출자료전송]에서 ‘학적반영 자료선택(최종반영일자)’에서 해당 영역을 선택하여 확인한 후 {③전출자료보내기}을 하면, 전입교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 기결취소 하지 않고 [학적-전입 관리-전입관리-학적반영]에서 해당 학생의 성명을 클릭하여 ‘학적반영자료선택(최종수신 일자)’에서 반영할 자료를 선택(예: 학생생활)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자료이관}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선택 항목에 대하여 학적반영 이후 입력된 자료는 모두 삭제가 되므로 미리 출력하거나 자료를 다운받아 자료이관 이후 재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240~241쪽

Q10 교육정보시스템 미사용 재외한국학교와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 학교 간에 학생의 전출·입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재외한국학교 → 국내 학교로 전입 시)

- ① 국내 학교에서 재외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함.
- ②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함.
- ③ 재외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 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 입력]에서 입력함.
※ 재외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재외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 학교에 제출함.
- ※ 국내 학교(A) 전출 → 재외한국학교(B) 전입·전출 → 국내 학교(C) 전입 시 국내 학교(A) 또는 재외한국학교(B)로부터 이전학년도 자료를 받아 입력함.

2. (국내 학교 → 재외한국학교로 전출 시)

- ① 한국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확인함.
- ②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종합자료검색]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함.

- ③ 국내 학교에서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 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함.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7~58쪽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Ⅱ 291~300쪽

Q11 방학 중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1학기가 끝나고 성적처리까지 완료된 학생이 국내 학교로 전입하려고 하는 경우 2학기 시작하는 날로 전입을 받아야 하나요?

A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하고 전입처리를 하면 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쪽

Q12 부의 직장 및 전세계약 등의 문제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은 전입학을 할 수 없나요?

A

부분 전입 사유서와 추가 서류(부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를 받아 전입학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13 이혼가정으로 친권자인 어머니가 학생을 키우는데 일 때문에 이모집에 학생을 맡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입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전입 가능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교육지원청 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전편입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예시)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전입 처리가 가능한 경우의 제출 서류는 친권자 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양육위임동의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양육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내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14 한부모 가정의 친권자가 아닌 부가 자녀와 함께 전입 처리 시 친권자인 모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전입학이 가능한가요?

A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예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전입 처리가 가능한 경우의 제출 서류는 부분전입세대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전·편입 시행 지침에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 단, 사정상 상대 친권자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학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사유서 및 서약서 제출(친권자 전입학 확인서)로 상대 친권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제안 정책과제 ‘중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권고 및 협조 요청」(교육부, 기초 학력진로교육과-691(2024. 2. 22.))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15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 특수교육 위원회로부터 선배치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공문을 근거로 일반 학생처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출·입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3. 전입학·전출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16 타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교운동부 3학년 남학생이 운동을 포기하고 거주지역의 일반중학교로 다니겠다고 합니다. 이때 타지역 학교에서는 운동부 포기원 등 서류를 받고 처리했습니다. 전입하고자 하는 거주지역의 학교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기존 전입학 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더 받아야 하나요?

A 일반학생 전학서류처럼 받으면 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3. 전입학·전출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17 전학 온 학생에 대한 위장전입에 실사 시기와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다시 원적교로 돌려보낼 때 처리 절차 등이 어떻게 되나요?

A 위장전입의 실사는 전입교에서 전입 전 또는 전입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합니다.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부모로부터 위장전입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전입처리 취소하고, 원적교로 보냅니다. 원적교로 보낼 시 전입 기간 동안의 출결상황은 전입교-전출교(원적교)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원적교로 보낼 때 전입 처리 취소 또는 전출 처리 여부 등 자세한 처리 방법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업무처리 지침’ 참고

Q18 전입생이 있는 전입교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전입생에 대해 전입교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출교의 재학증명서
- 2) 입학년도의 교육과정편성표(미이수과목 확인)

• 누락된 교육과정 편제표 확인 방법

- 전출교에서 전송한 전입생의 입학당시 3개 학년 교육과정 편제표 파일 확인(전출처리 시 교육과정 편제표 첨부하여 전송 가능함)
- 학교알리미(초·중등교육정보공시서비스, <https://www.schoolinfo.go.kr>)-[전국학교정보-학교별 공시정보]-해당 학교, 공시정보 해당 연도 선택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확인

3) 교과서 무상 지급 확인서

교과서는 1인 1회 지급이 원칙이나 전입·전출의 경우는 적용 예외로 하며,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전출교가 지급한 교과서가 달라도 미회수(교과서 반납은 학생당사자(학부모)와 학교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가 가능함.

전출학교에서는 「교과서 무상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학서류에 첨부하고, 전입학교에서는 「교과서 무상 지급 확인서」 목록을 참고하여 다른 교과서에 한하여 지급함.

• 학기 시작 전 전출·입 학생 교과서 지급 방법

구분	국정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신학기 시작 1개월 전 전입교 결정 (예: 1월 31일까지 전입교 결정)	신학기 시작 1개월 전 전입교 미결정 (예: 2월 1일까지 전입교 미결정)
전출교	지급, 미회수	미지급	지급, 전출 시 회수
전입교	미지급	지급	전입 시 지급

- 학기 중 전출·입 학생 교과서 지급 방법

구분	국정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전입·전출교가 같은 교과서 사용	전입·전출교가 다른 교과서 사용
전출교	미회수	미회수	〈변경전〉회수 → 〈변경후〉미회수 가능
전입교	미지급	미지급	지급

- 4) [1학년 해당] 신입생 교복 지원 확인서(차액금이 있는 경우 경기도 전입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차액금이 없는 경우 미지원됨)
이 외에도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에 준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업무처리 지침’ 참고
교육과정정책과 ‘2025년 전입학생 미이수·증복이수 문제 해소 계획’
교육지원청별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 재고 관리 계획’ 참고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계획’ 별임 18

Q19 전출을 간 학생이 다시 전입을 올 경우 같은 반, 같은 번호로 전입처리를 할 수 있나요?

- A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전출을 갔다가 다시 전입을 오는 경우라면 같은 반 전입은 가능하나, 번호는 다르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Q20 2025학년도 3월 3일(대체 공휴일) 전출하여 3월 4일에 전입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년이력의 ‘담임성명’란에 전출교 담임교사 이름의 기재 여부와 출결상황의 ‘수업일수’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 A 2025학년도 진급일이 3월 1일이므로 전출교에서 담임교사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수업일수는 ‘·’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쪽, 157쪽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264쪽

Q21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전입할 경우, 전입처리일을 관할 교육지원청 공문에 명시된 재배치 일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등교 시작한 일자로 해야 하는지요?

- A 관할 교육지원청 공문에 명시된 재배치 일자를 전입일로 처리합니다.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업무처리 지침’ 참고

Q22 비밀전학으로 타 시로 전입요청 시, 전입교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A 비밀전학은 교육지원청 배정에 해당하는 전입학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하고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습니다.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업무처리 지침’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3. 전입학·전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0쪽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231쪽

Q23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제주국제학교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일반중학교로 입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학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제주국제학교에서 일반중학교로 입급하는 경우는 ‘재외한국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에 준하여 전입으로 처리하며, 학년 배정은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9쪽

Q24 다문화 가정의 경우 모든 가족의 실거주가 확인되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 서류 등에 부, 모 중 1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A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의 의무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누락된 외국인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F-4)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

「주민등록법」(2020. 12. 10. 시행) 제6조(대상자)제1항

Q25 학교군(중학교)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 A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학교군(중학교) 안내를 확인하거나, 학구도안내서비스 (<https://schoolzone.emac.kr>)에서 '전입지 주소'를 입력하여 배정 가능한 학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3. 전입학·전출

Q26 재외한국학교 현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 A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의 한국학교 현황을 참고하거나, 교육부 누리집 (<https://www.moe.go.kr/>)-[정책-국외(유학) 교육-재외한국학교현황]을 확인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3. 전입학·전출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1 의무교육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반드시 1명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A 위원장(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으로 당해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 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2 정원 외 학적관리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원외 학적관리일을 다르게 지정해도 되나요?

- A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을 하였다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의 상황별로 정원 외 학적관리일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3 면제처리 시 면제일자는 어떤 날짜로 해야 하나요?

- A 면제일자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의무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입니다. 예시로 당해 학년도 검정고시 합격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검정고시 합격일, 당해 학년도 합격이 아닌 경우에는 면제신청서 제출일 등으로, 인정유학자는 출국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학년도 검정고시 합격생이 아닐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이전 학년도의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면제일을 검정고시 합격일이 아닌 날로 의무교육위원회에서 정해야 함.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 47쪽

Q4 인정유학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A 인정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외국의 학교로 진학(면제의 한 사유임)하는 경우이고 여기서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입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1. 법적 근거 및 용어

Q5 부의 해외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생과 동반 출국한 경우 면제처리할 수 있나요?

A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이므로 부의 해외 대학원 진학으로 인하여 학생과 동반 출국한 것은 미인정 유학에 해당되므로 면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Q6 부의 해외 취업으로 해외로 동반 출국하는 일자로 면제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면제일의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면제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하므로 면제일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 이전까지는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64쪽

Q7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2월 중순에 이민 예정으로 면제처리 대상자입니다. 학생 보호자의 면제 신청이 없는 경우 졸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면제처리는 학생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므로 보호자의 신청이 없다면 면제처리를 할 수 없지만,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였고, 학기말 성적이 산출되었다면 졸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 64쪽

Q8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인정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면제 처리해도 되나요?

A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하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전학)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면제(학적변동)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전학조치 후 전학 간 학교에서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46쪽, 88쪽

Q9 외국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재학 중 여권 만료로 인하여 2025.12.01. 자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학적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A 외국인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면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자퇴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자퇴’로 처리하며, 학적 특기사항은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중학교: 2025.12.01.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고등학교: 2025.12.01. 본국 귀국으로 인한 자퇴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36쪽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7쪽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5쪽

Q10 초·중학교에서 중도 입국한 외국 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장기 미인정결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절차를 참고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인정결석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 할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여 포기원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면제로 처리 합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으로 포기원 및 출국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요청하여 면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37쪽

Q11 외국 국적 학생이 2학기 초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당해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A 외국 국적 학생이 일정한 학력 인정 절차를 마쳐 입금하려는 1학기까지 이수인정을 받아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출석일

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진급처리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처리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37쪽

Q12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학교를 다니기 싫어하고, 보호자가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부 적응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생 보호자와 학생이 면제 신청을 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면제로 처리합니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37쪽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Q13 중학교에서 유예되었던 학생이 2024학년도에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것을 확인하여 학생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학적 특기사항은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나요?

A 2022학년도부터 학적 특기사항에는 해외 수학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입력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2024.08.02. 외국 중학교 졸업으로 인한 면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0쪽

Q14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예술중학교에 합격하여 다음 학년도에 입학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학적처리는 용어는 어떻게 되며, 학적 특기사항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A 합격한 예술중학교로부터 신입생 입학전형 합격과 관련된 공문을 근거로 면제 처리합니다. 학적 특기사항에는 ‘2026.02.28. ○○예술중학교 입학으로 인한 면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Q15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학생(학령초과자)을 면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며, 학적 특기사항과 면제 처리 일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없이 '면제'로 처리 합니다. 이때, 면제일은 면제신청서 제출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적 특기사항에 외국인의 경우 '2025.10.28.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Q16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의 면제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A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의 면제 처리 시 학생 보호자의 면제신청서 및 외국학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17 본교에서 유예 중이던 학생이 꿈이음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졸 학력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면제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학적 특기사항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A 학적 특기사항에 '2025.07.31.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으로 기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18 학생의 면제일을 공휴일로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면제일자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일, 면제신청서 제출일 등으로, 인정유학자는 출국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47쪽

Q19 전가족 해외 출국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동반 출국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학기만 인정유학을 하고 다음 학년도 2학기에 재취학 예정인 경우 2학기 수업일수인 95일을 기준으로 3분의 2이상 출석 시 졸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A**
1. 학생(학부모)이 출국 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사전 개최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면제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2. 한 학기만 인정유학을 하고 다음 학년도 2학기에 재취학 예정이라면 2학기 입급일 기준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시 졸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정규학교 이수 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6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Q20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 학생이 가족과 함께 해당 나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정유학으로 면제처리를 할 수 있나요?

- A**
-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므로 의무교육대상자로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해외 출국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제로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 47쪽, 50쪽, 54쪽

Q21 2024학년도 4월 질병 유예된 3학년 학생이 2025학년도 5월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본교(중학교)에 합격증을 갖고 와 면제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정대장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A**
- 이전 학년도에서 학업이 중단된 학생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교육정보 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 외관리]에서 해당 학생을 찾아 학적을 면제로 변경하며, 학적 특기사항에는 ‘2025.05.08.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인한 면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Ⅱ 251쪽

Q22 검정고시 합격으로 면제처리 시 검정고시 합격일로 학적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 신청서의 접수 받은 날로 해야 하나요?

A 면제일자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입니다. 예시로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일, 면제신청서 제출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이전학년도 검정고시 합격일로는 면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47쪽

Q23 유예 후 ‘정원 외 학적관리’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예 후 ‘정원 외 학적관리’의 경우 유예일자가 학적변동일로서 재학생에 포함되어 수업일수 등이 반영되고, 다음 일자부터 ‘정원 외 학적관리’일이 되어 재학이 아닌 학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의 경우 정원 외 관리 시작일은 학적상 제외 처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원 외 관리 시작 당일부터 재학이 아닌 학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를 제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여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결석’이라 함은 미인정결석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구분	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변동일자	출국일, 사망일	유예일	
정원 외 학적관리일	정원 외 학적관리로 처리하지 않음	유예일 다음날	(기준일) 미인정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되는 다음날부터 가능 (예시) 수업일수 190일~192일: 미인정결석 65일부터 수업일수 193일: 미인정결석 66일부터
학적변동일의 수업일수 및 학생수 포함 여부	포함	포함	불포함
학업중단여부	○	○	○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4쪽

Q24 유예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를 공휴일로 정해도 되나요?**A**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250쪽

Q25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대안교육기관은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하며,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나,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학력이 미인정되는 기관입니다.

 **참고사항**
대안교육 관련 기관(시설)의 개념 및 학력 인정 여부

명칭	개념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각종학교로, 학력을 인정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1조제4항, 제54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특별 교육이수, 학업 중단 위기학생 등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시설·기관으로, 재적교의 학력을 인정함. ※ 재적교에 학적을 두고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 운영.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서, 학력 미인정. ※ 의무교육대상자일 경우 취학의무 유예 가능.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나,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교육시설로서, 학력 미인정.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문의함.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184쪽

Q26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유예 처리 절차와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바탕으로 유예받으려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신청(유예신청서 제출)에 따라 학교장은 그 사유를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로 처리합니다. 다만,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가 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Q27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유예 처리된 학생이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 출국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유예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재취학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국일을 기준으로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이후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28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유예한 경우 학적 특기사항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나요?

A 학적 특기사항에는 ‘2025.07.10.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29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유예는 언제부터 유예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질병결석일수와 관계없이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감이 정한 유예는 유예신청서와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 유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30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하는 결석 일수를 산정할 때 지각·조퇴·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A 지각·조퇴·결과 등의 횟수는 산정하지 않고 미인정결석 일수로만 산정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66쪽

Q31 수업일수에 따른 진급 가능한 출석일수 및 유급,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시 결석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A

수업일수	진급 가능 출석일수	유급 결석일수 (미인정결석+질병결석+기타결석)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기준일 (이후부터 처리 가능, 의무 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정원 외 학적관리 결석일수 (미인정결석)
190일	127일	64일	65일	64일
191일	128일	64일	65일	64일
192일	128일	65일	65일	64일

예시) 진급 가능 출석일수: $190\text{일} \div 2/3\text{이상 출석} = 126.6666 \Rightarrow 127\text{일}$
 유급 결석일수: $190\text{일} - 127\text{일} + 1 = 64\text{일}$
 정원 외 학적관리 결석일수: $190\text{일} \div 1/3\text{이상 결석} = 63.33333 \Rightarrow 64\text{일}$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3~48쪽

Q32 정당하지 않은 사유(미인정결석)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가 190일이라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당해학교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 190일의 3분의 1이 63.333...이므로, 3분의 1 이상인 64일째 미인정결석한 다음 날부터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며, 학생 보호자의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를 제출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4쪽

Q33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에 의한 면제·유예 처리를 준용하여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가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4쪽

Q34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되어 유급이 예상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해야 하나요?

A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학교를 계속 다녀도 진급 또는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학생, 학부모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 및 설명드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를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51쪽, 54쪽

Q35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 출국하여 장기 미인정결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은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Q36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장기 미인정결석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 정보시스템에서 '변동 사유'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A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으로 정원 외 관리 처리 시 변동사유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출국'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255쪽

Q37 학생이 미인정결석과 질병결석을 포함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라는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학기 말 유급 처리만 가능한가요?

A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미인정결석+질병결석+기타결석)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행정 처리 용어)는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한 행정 처리 방법입니다.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를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입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4, 46, 47, 54쪽

Q38 간헐적으로 발생한 미인정결석 일수의 합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된 경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미인정결석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한 미인정결석 일수도 포함됩니다. 해당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쳐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가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년말 진급처리 시 유급대상자로 등록합니다.

Q39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시 장기결석 기준이 되는 결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미인정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미인정 유학,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학원수강 등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66쪽

Q40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면제/유예및장기결석에따른정원외관리]에서 {추가}하여 변동구분을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선택할 경우 '변동사유'에 나타나는 사유의 종류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 특기사항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나요?

A 변동사유와 학적 특기사항의 사유는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Q41 2024학년도에 유예 후 2025학년도에 타교 재취학한 학생의 학적 특기사항에 질병으로 인한 유예는 기재되어 있으나 정원 외 학적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적 특기사항에 정원 외 학적관리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업 중단 당시의 학적 처리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출교로부터 전송 받아 이를 근거로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원 외 학적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0, 131쪽

Q42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의 경우 취학의 면제 또는 유예 시 당해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 위원회에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게 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5 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1 국내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외국에서 정규학교에 수학 후 1~2월에 귀국한 학생이 신학년도에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해당 귀국학생의 재취학 처리를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재취학 결정을 위해 당해 학년도 2월말까지로 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6. 조기진급 및 졸업

Q2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 인정평가 대상 학생과 시행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A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 대상 학생은 학년 배정을 위한 취학·재취학·편입학생, 조기진급생, 조기졸업생이며, 시행 과목은 취학·재취학·편입학의 경우 당해 학기 직전 학기에 개설된 모든 과목이고, 조기진급, 조기졸업은 상위학년에 개설된 모든 과목입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6. 조기진급 및 졸업

Q3 매 학년도 도래 시 정원 외 학적관리된 모든 학생에 대해 재취학 독려를 해야 하나요?

A 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신학년도 시작 전 당해 학교에 누적된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에 대한 재취학 독려를 해야 합니다. 통지기일은 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로,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의 경우 학년도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입니다. 재취학 독려 후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연장신청서와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원 외 관리 연장 심의를 하여 정원 외 관리를 누적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에 대한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학적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재취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학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의 재취학을 심의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관리
2025년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Q4 초등학교 4학년 9월에 인정유학으로 출국하여, 4학년 2학기에 면제 처리 후 외국 정규교육기관에서 5학기를 이수하여 중학교 1학년 3월 31일에 중학교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이 학생에게 적용할 학적 용어는 무엇일까요?

A 의무교육대상자가 유예 후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학교에 다니는 것은 재취학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1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이므로 입학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55쪽

Q5 초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합격(5월 8일) 후 중학교 1학년으로 입급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며, 어떤 학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A 해당 검정고시 합격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급할 수 있으므로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입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입학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8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 배정·입학 관리

Q6 외국에서 정규학교가 아닌 학력 미인정 초등교육 시설에 입학하여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귀국 후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정규학교가 아닌 교육 시설만을 다녔을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내 초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7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해외로 출국(미인정 유학)하여 국내 초등학교에서는 2학기 11월에 정원 외 학적관리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2개 학기만 이수하고 다음해 12월에 국내로 왔습니다. 연령상으로 중학교 1학년 입학자에 해당되나 한 학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경우 3월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 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국내 최종학력과 외국 정규학교의 이수 학년을 합하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것이 되므로, 한 학기가 부족하여 중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이 불가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8 면제 처리되어 국외로 유학한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외국학교 부적응 등)이 있어 한두 달 뒤(당해 학년도)에 귀국 예정입니다. 이 학생을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됩니다. 이 경우 최초 면제 처리된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면제 취소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 후 학적반영을 취소하고 해당기간 동안의 출결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4조(편입학)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Q9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한 학생이 부적응으로 한 달 후에 다시 원적교로 입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학생이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 시 유예 처리되었고 다시 원적교로 입급 시 당해학교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가능하므로 재취학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55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10 학기초 미인정 유학으로 인해 6월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이 된 학생이 7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을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당해 학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4조(편입학)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11 1학기 마치고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 유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이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하여 진급하려면 언제 재취학 해야 하나요?

A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유예일 이전까지 재취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취학으로 인한 학년 중복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를 해야 합니다(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 중복된 기간은 재취학 이후의 출결상황이 반영됨.

[중복기간 삭제 기준 예시]

예시) 2023.07.12.자로 ○○중학교 3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25.05.09.자로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2023.05.09.-2023.07.12.까지의 내용은 삭제함.

2023.05.09.	2023.07.12. 3학년 유예
이전내용 인정	중복기간 삭제
새로 수행하는 사항 입력	
2025.05.09. 3학년 재취학	2025.07.12.

예시) 2024.11.07.자로 ○○중학교 2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25.08.22.자로 ○○중학교 2학년으로 재취학 후 다시 2025.10.16.자로 학업중단을 한 경우에는 2024.08.22.자 이후의 내용은 삭제되며, 재취학 이후의 기간(2025.08.22.-2025.10.16.) 동안 수행한 내용을 입력함.

2024.08.22.	2024.11.07. 2학년 유예
이전내용 인정	중복기간 삭제
이후 내용 삭제	
새로 수행하는 사항 입력	
2025.08.22. 2학년 재취학	2025.10.16. 2학년 유예

* 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54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12 중학교 1학년 학기초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으로 유예처리 된 학생이 2년 뒤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이 가능한가요?

A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일 학교급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기간(이수 학기)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13 중학교 1학년 학기초부터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생)이 중학교 상위 학년으로 재취학이 가능한가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여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14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교와 이사한 지역의 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재취학 처리해야 하나요?

A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같은 학군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원적교로 복귀해야하고, 같은 학군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군의 학교로 바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원적교로 재취학하여 이사한 지역의 학교로 전출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사한 지역의 학교에서 원적교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등록}을 클릭한 후 '전편입재취학생 등록' 창에서 '변동구분'을 '재취학(타학교)'를 선택하여 등록하여 타교재취학 요청을 한 후 원적교에서 이사한 학교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전송하면 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53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227쪽

Q15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중학교 1·2학년 재학사실이 없더라도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 후 졸업처리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정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16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를 그만 둔 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 후 졸업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재취학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학교장 판단하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 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활용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하므로 고등학교 입학원서 작성 시 검정고시 성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중학교에 재취학한 경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활용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단,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없는 경우 등 중학교 졸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고입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참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Q17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재학의 사유로 정원 외 학적관리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 없이 다음 해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이 가능 한가요?

A 불가합니다. 중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 받아야만 가능하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 검정 고시에 합격하였거나, 해외에서 초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가 해당 합니다. 따라서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후 가능합니다.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Q18 미인정 유학 중에 재취학하는 경우와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재학이나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중에 재취학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 미인정 유학 중 재취학

교육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 정규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년 결정을 합니다.

* 국내 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학생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다음 학년도 이후에 입급하는 경우 그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단,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2.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재학이나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중 재취학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당시 학년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재취학이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4~57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19 이전 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미인정 유학으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 정규학교에서 2개 학기를 이수하고 올해 귀국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당 학생이 외국 정규학교의 이수내용과 관계없이 3학년 2학기에 재취학이 가능하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학생이 외국 정규학교에서 2개 학기 이수를 인정받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을 한 경우, 출신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사실을 근거로 학생과 학생 보호자의 면제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20 국내 소재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중학교로 입급이 가능한가요?

A 재취학하려는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재취학 및 학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와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미군기지 내 학교는 학력미인정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중학교로 입급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그대로 국내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9쪽

Q21

2025학년도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미인정 결석)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이 2025학년도에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1학기 동안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8월 말에 귀국하여 9월 1일자로 3학년 2학기로 재취학하면 졸업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당해 학년도 3학년 2학기로 재취학하여도 3학년 1학기 동안 미인정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미수료로 졸업이 불가능하며,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쪽

Q22

미인정 유학으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추후 부모의 해외취업으로 인해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정하여 면제로 변경 처리할 수 있나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한 내용을 최소하고 면제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추후 부모의 해외취업은 면제 사유에 해당되므로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면제로 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면제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기존의 절차 및 서류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후 면제 처리하는 경우 학생이동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7~51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23

학기 중 귀국하는 학생의 경우 귀국 후 며칠 이내로 재취학(편입학) 신청을 해야하나요?

A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재취학(편입학) 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입금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이미 수료하고 방학 전에 귀국한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필요한 만큼의 수학기간이 인정된다면, 최종 재학일 이후 재취학(편입학)은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재취학(편입학) 일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Q24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때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25 미인정 유학 학생이 귀국하여 재취학 시 어떤 절차를 거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미인정 유학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취학 여부를 정합니다. 평가 방법, 평가 내용, 합격 점수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26 국외에서 하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수 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로 입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제 차이로 하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 한 학기 월반이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6~57쪽

Q27 2024학년도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9월에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국제학교에 재학하려 하였으나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이후 2025년 3월에 베트남 국제학교의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입급하여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몇 학년으로 입급할 수 있나요?

A 귀국학생의 학력은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학교의 수학 기간만 인정하며,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 과정은 수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학원은 정규학교가 아니므로 수학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국내 최종 학력과 베트남 국제학교의 이수 학년을 합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것이 되므로, 2학년 2학기로 입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28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출국하여 9월부터 학제가 시작되는 외국(12학년제)에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마쳤습니다. 귀국 후 3학년 1학기로 재취학할 수 있나요?

A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1학년 1학기 중복이 인정되어 귀국 시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29 초등학교 4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외국학교(12학년제, 4학기제)에서 4학년 4학기부터 8학년 3학기까지 이수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내로 귀국하여 재취학 신청하게 되면 몇 학년으로 입급할 수 있나요?

A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년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했을 때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의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내·외 이수 학기를 합산하여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4학기제)												
학년 결정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30 귀국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이수 후 외국 정규학교(9월 학제)에서 학제 차이로 6학년 2학기부터 이수하였습니다. 7학년 1학기까지 이수 후 내년 3월에 국내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3월에 재취학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재취학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귀국학생이 학제 차이로 인하여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한 학기가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재취학할 때는 한 학기를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로 입학(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31 귀국학생이 2학기에 상위 학년으로 재취학한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진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따라서 남은 수업일수가 학교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32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에 재학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학생이 외국에서 수료한 학년과 학기를 그대로 인정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나요?

A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라는 뜻입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한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이 생략 가능하여 귀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이 간소화될 뿐, 수료한 학년과 학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에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참고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교육부, 2014. 8. 22.)

Q33 외국에서 수료한 성적을 재취학·편입학한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학년의 국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5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34 외국소재 정규학교에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고, 학교생활기록부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해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A 학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해당교 재학기간과 학기별 성적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영문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일 경우 공증받은 번역문(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자요령(중학교) 56쪽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0~15쪽

Q35 외국학교 성적증명서를 재학한 학교가 아닌 해당 국가 교육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인정 가능한가요?

A 외국학교 학력인정은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인정 가능하며, 해당 국가 교육부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자요령(중학교) 56쪽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0~15쪽

Q36 외국학교 학력 증빙서류에 학교장 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국가 교육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A 외국학교 학력 증빙 서류에는 반드시 해당교 학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교육부 또는 영사 확인으로 학교장 서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자요령 56쪽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0~15쪽

Q37 국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습니다. 9학년 1학기 과정 수료 중 지진으로 인하여 2개월 일찍 귀국하여 마지막 학기를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재취학이 가능한가요?

A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재취학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38 5년 학제인 외국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졸업한 후 외국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취학이 가능한가요?

A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합니다. 5년 학제인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수료하였다면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취학 가능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39 2024학년도 국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국내에서 졸업한 후, 외국 정규학교에서 2025년 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학업 후(7학년부터 8학년 1학기까지 이수) 귀국하여 2026학년도에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재취학하고 2027학년도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A 2학년 2학기로 재취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면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4~57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40 초등학교 5학년에 정원 외 학적관리되었던 학생이 외국에서 정규학교 수학 후 5월 초에 국내 중학교 1학년으로 입급 시 '재취학'으로 처리했습니다. 9월 현재 '재취학'을 '입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 절차에 따라 재취학을 입학으로 변경하되, 단계 ①번과 ②번의 작업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① **(학교생활기록 학적사항 변경)**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의 {2. 정정대장 등록}에서 정정항목을 '인적·학적사항' - '학적사항'을 선택하고 {3. 항목별정정}에서 '학적변동구분'을 '재취학'에서 '입학'으로, '학적변동사유'를 선택함(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침).

② **(학생이동부 수정)**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이동부]에서 해당학생을 클릭 후 '학생이동부 수정' 창에서 '변동구분'을 '재취학'에서 '입학'으로 수정함.

③ **(학교일지 수정)** [승인사항-상신함]에서 수정된 학적반영일자의 학교일지 기결취소 후 [교육과정-학교일지관리-학교일지관리]에서 학교일지 {제거} 후 다시 {생성}후 {승인요청} 함(학교일지 활용 여부는 선택사항임).

Q41 국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마치고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A국의 외국 정규학교(12학년제, 2학기제)에서 6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B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어 시기상 6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B국의 외국 정규학교(12학년제, 2학기제)에서 6학년 1학기부터 7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내로 귀국하여 재취학 신청하게 되면 몇 학년으로 입급할 수 있나요?

A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년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 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6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하였으므로 귀국 후 국내 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를 올려서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A국)						1						
외국 교육 연한(B국)							1	2				
학년 결정						1	2	3				

Q42 [2개국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의 학년 결정 질의]

국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외국 정규학교(12학년제, 4학기제)에서 5학년 4학기부터 7학년 4학기까지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정규학교(12학년제, 4학기제)에서 7학년 4학기부터 8학년 4학기까지 이수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내로 귀국하여 재취학 신청하게 되면 몇 학년으로 입급할 수 있나요?

A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년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 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재취학 학년을 정하는 것이 아님).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했을 때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의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국내·외 이수 학기를 합산하여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12학년제)												
외국 교육 연한(12학년제)												
학년 결정												

Q43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중학교로 편입학을 할 수 있나요?

- A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안내를 권장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74조(편입학) 제1항,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Q44 외국인 등록 사실이 없는 외국인 학생이 국내 학교에 입급할 수 있나요? 입급이 가능하다면 제출받을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외국인 등록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 학생도 국내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전입을 거부할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배정 원칙에 의하여 외국국적 학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임대차 계약서나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학구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9쪽

Q45 외국인 학생이 취학 또는 편입학 시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A 외국인 학생이 학력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는 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는 학력인정 및 학년 결정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학력증빙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46 외국 국적 학생이 학년을 낮춰서 취학(편입학)을 희망합니다. 가능한가요?

- A 학년 결정은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한 번 결정된 학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5쪽

Q47 외국인 학생이 면제 후 다시 학교에 편입학할 시, 당해학년도에는 불가능한가요?

- A 정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가능하면 편입학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67조, 제74조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2쪽

Q48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이 중학교에 처음 입급 시 학적처리 용어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당해학년도 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에 입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으로, 그 외에는 ‘취학’으로 처리합니다. 학적처리 절차는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학생 배정 지침에 따라 학교 배정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도와주는 경기도형 다문화 대안학교(예비학교)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49 편입학을 신청한 외국인 학생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아기수첩에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 경우 아기수첩 내용으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 A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아기수첩(접종기관의 공식 서명 또는 직인 필수)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해당 내용을 전산 등록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접종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공식 서명 또는 직인 필수) 또한 등록 가능합니다.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Q50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중학교 2학년의 학력 인정을 받은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학교에 입급을 신청했습니다. 이 학생의 학적처리 용어와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 2학년으로 처음 입급하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5쪽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0쪽, 20쪽, 59쪽

Q51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여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본국의 정규학교에서 수학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후 다시 입국하여 2학년 2학기로 편입학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 희망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A 해당 학생은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외국에서 정규학교 이수 사실이 없으므로 1학년 2학기로는 편입학 가능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1항, 제98조의2(학력심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2023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교육부)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52 외국인 학생이 3월 본국으로 귀국하여 면제처리 하였습니다.

- 같은 학년도 11월 한국으로 돌아와 원적교로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년도 면제 처리 후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 당해 학년도에 면제 후 편입학이 가능하다면 수업일수 3분의 2 미만이 남은 경우인데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 이때, 본국에서 다닌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학력인정이 되나요?

A 1. 한 학기 이상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고 편입학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2.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 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귀국학생(외국인)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 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3.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므로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성적증명서로 학년을 결정합니다.

참고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4~57쪽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66~79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5.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6 조기진급 및 졸업

Q1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A 상급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상급학교에 합격하였으므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는 거치지 않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조기졸업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6. 조기진급 및 졸업

Q2 영재학교 합격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조기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졸업일자는 올해 3학년 졸업일로 해야 하나요?

A 조기졸업은 현재 3학년 졸업처리 시 함께 처리하므로 조기졸업일자는 3학년 졸업일로 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6. 조기진급 및 졸업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400쪽

Q3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지능 지수(IQ) 시험에서 각각 140 이상 취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6. 조기진급 및 졸업

Q4 명예졸업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학칙으로 정해야 하나요?

A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별 학칙에 명예졸업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 예시로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기타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4쪽, 48쪽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Q5 사망한 학생이 있어 명예졸업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칙에 명예졸업 관련하여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칙 개정 시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당해 학년도에 한해 해당 학생에 대한 명예졸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4쪽, 48쪽

7

기타(위탁교육 등)

Q1 중학교 2학년 학생이 3월부터 11월까지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 정보시스템에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위탁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위탁학생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에서 학기 단위로 등록하므로 1학기, 2학기에 각각 위탁학생으로 등록합니다. 이때 1학기 종료일과 2학기 시작일은 당해 학교 교무학기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80쪽

Q2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입니다. 이 학생의 출결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학급담임교사가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 인정결석으로 등록하되, 사유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 분류심사원 재소기간 동안은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며, 재적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누가기록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69쪽
경기도 중학교용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373쪽

Q3 교과교육과정이 개설된 소년원학교에 학생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적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원적교에서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하므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중)/[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 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등록](고)에서 학기 단위로 등록하되, 「소년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소년원학교는 '기타'로 등록합니다.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과목 성적(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내용은 소년원학교에서 송부한 서류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은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80쪽, 182쪽

Q4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등교학습 지원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출결과 성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중)/[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등록](고)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위탁기관의 출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반영합니다. 그리고 재적교 평가(지필평가·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위탁기관의 출결처리(출석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등)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참고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결과 성적을 처리합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69~70쪽, 182쪽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71쪽, 257쪽

참고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7969(2020.10.20.)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16124(2020.11.12.)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021.10.29.)

Q5 중학교 2학년에 7월 초까지 등교하다가 이민으로 인해 학적이 면제된 학생이 외국에서 3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귀국 예정이며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이 학생이 해당 학기를 수료 및 이수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에 따라 이 학생은 해당 학기를 수료 및 이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2022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 20쪽 21쪽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4.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6 각종 학적 관련 구비서류의 발행처를 알고 싶습니다.

A 학적관련 구비서류의 발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내용	수량(통)	발행처	비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통	외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증명서는 모든 이수 학기에 대한 성적이 산출되어야 함 (일부 학기 성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빙 불가)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외국소재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 공시)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 제출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 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1통	국내 학교	국내 최종 재학학교 행정실에 신청 또는 가까운 학교 행정실 FAX 민원 신청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1통	국내 학교	국내 최종 재학학교 행정실에 신청 또는 가까운 학교 행정실 FAX 민원 신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부, 모, 학생 각1통 (비고란 참조)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례귀국자, 외국인학생: 부, 모, 학생 각 1통 일반귀국자: 학생 1통(미인정유학 학생) - 인정 유학자의 경우 부, 모, 학생 각 1통
주민등록표 등본	1통	행정복지센터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로 구성 될 것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 모, 학생 각 1통	체류국 재외공관, 재외동포청(송도, 광화문),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 사실증명서도 가능
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만 1통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	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국내거소사실증명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시민권) 사본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예방접종증명서	1통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부24	[전산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1.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2. 보건질병관리청 누리집 접속하여 [사업별 누 리집-예방접종도우미-예방접종관리-전자 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 다운받아 입력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된 번역문(영문, 한글) 제출

2. 북한 이탈 학생

내용	수량(통)	발행처	비고
주민등록표 등본	1통	행정복지센터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통	해당 시청	
학력확인서	1통	해당 시청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통	해당 시청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Chapter 04

Chapter 05

Chapter 06

Chapter 07

Chapter 08

Chapter 09

8 고등학교 주요 학적처리 관련(자퇴, 퇴학, 휴학 등)

Q1 [입학] 2025년 3월 1일 A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3월 5일에 자퇴하여 2025년 3월 11일에 당해 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한 B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당해 학년도 A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당해 학년도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Q2 [입학] 특례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대상자(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의 교육정보시스템 등록 시 학적변동구분은 ‘입학’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학적변동 사유는 ‘정상입학’, ‘검정고시’, ‘체육특기자’, ‘기타정원외’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하며, 학적 특기사항은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나요?

A 학적변동 사유는 ‘기타정원외’로 선택하고, 학적 특기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으로 기재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Q3 [재입학] 2024년 5월 10일 자퇴한 학생이 2025년 6월 10일에 재입학을 할 수 있나요?

A 재입학은 다음 학년도의 자퇴한 시점 이전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학생의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 이전에 재입학해야 합니다. 다만, 재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6월 10일 재입학을 요청하는 경우, 자퇴한 학년도 출석일수와 재입학 일자 이후 남은 출석일수의 합이 재입학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이 되고 학교장이 재입학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9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92조

Q4 [재입학]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4월에 자퇴를 하고 다음해에 재입학을 원하는데 현재 학생 거주지가 학교와 다른 시도인 경우에도 학생이 원하면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A 네, 학생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진로직업교육과)

Q5 [재입학] 학년말에 고등학교 2학년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자퇴한 학생이 2학년 재입학이 아닌 1학년으로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입학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용) 44쪽

Q6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다시 입급할 수 있나요? 입급 시 학적처리 용어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를 그만 둔 학년 또는 그 아래 학년으로 입급하는 경우 ‘재입학’으로, 상위 학년으로 입급하는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생이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입급하는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처리합니다(1학년 신입학 제외).

Q7 [재입학] 고등학교 재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음 학년도에 원적교로 재입학을 할 수 있나요?

A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입학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Q8 [재입학] 올해 3월 1일자로 1학년 입학 후 바로 자퇴하고 유학을 간 학생이 2학기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 정규학교에서 10학년(9월 1학기 시작 국가)을 다니고 있는데 1학년 2학기로 입급하는 경우 학적처리 용어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입학으로 처리합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는 재입학에 해당되며, 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는 편입학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 동안 외국 정규학교에서 수학한 내용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3쪽

Q9 [재입학] 이혼가정 자녀가 재입학하는 경우 제출 서류에서 특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친권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가 친권자면 상관없지만 친권자와 동거인이 다를 경우 반드시 친권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Q10 [편입학] 2024학년도 2학기에 자퇴를 한 학생이 타학교에 편입학으로 같은 학년도에 입급할 수 있나요?

A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편입학 신청 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입학 가능 여부와 절차는 편입교에서 결정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7쪽

Q11 [편입학] 중학교 졸업 후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유학을 가게 되어 해당 학교를 하루도 다니지 않아 자퇴처리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학기 시작 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원래 배정받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아니면 타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A 원래 배정받은 학교에도 편입학이 가능하고 타학교로도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편입학 신청 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7쪽

Q12 [편입학]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월 봄방학 기간에 자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2학년으로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A 2월에 자퇴한 시점에 출석일수와 교과목 이수 등 진급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2학년 편입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7쪽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Q13 [편입학] 편입학생의 학년 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옮겨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4쪽

Q14 [편입학]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외국 정규학교에서 1학기까지 이수하고 귀국한 학생이 2학기로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외국 정규학교에서 1년 3학기제 운영 시 2학기까지 이수 시 국내학교 1학기로, 3학기까지 이수 시 2학기로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3, 54쪽

Q15 [자퇴] 학생이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학업중단숙려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A 자퇴 등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에게 학교장은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및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업중단숙려제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자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제1항

Q16 [자퇴] 학업중단숙려제에 들어간 학생이 숙려제 기간에 자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숙려제 기간에 자퇴처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숙려제 철회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자퇴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02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교육복지과)

Q17 [자퇴] 자퇴생을 학적반영했을 때, 자퇴일자는 수업일수에 포함되나요?

A 학적변동일인 자퇴일자는 수업일수에 포함되고, 다음 날부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자퇴 학적반영일자를 5월 10일로 등록하면 5월 10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되고 5월 11일부터는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8 [자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언제 자퇴를 해야 하나요?

A 검정고시는 보통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고.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자퇴를 해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시) 2025.02.04. 시험 공고 시 2024.08.04. 자퇴자까지 응시 가능

2025.06.11. 시험 공고 시 2024.12.11. 자퇴자까지 응시 가능

Q19 [자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지 않고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3호에 따라 소년원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고등학교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8쪽

Q20 [자퇴] 휴학 중인 학생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자퇴원을 제출했을 때 자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학처리하지 않고 바로 자퇴처리합니다. 이 경우 학생이동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학년도', '기간' 확인 후 '미반영된 자료'를 선택하고 {조회}하여 {추가}하여 '휴학/자퇴/퇴학/제적생 상세조회'에서 {학생찾기}

로 휴학 중인 학생을 찾아서 ‘변동구분’에 ‘자퇴’로 등록한 후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하고 학적반영합니다.

Q21 [자퇴] 이민으로 자퇴를 하는 경우 자퇴원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영구 거주용 체류 비자 등 이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Q22 [자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보호처분 6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소년 보호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학생이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자퇴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자퇴)은 제한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6, 89, 103쪽

Q23 [휴학·자퇴] 고등학생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학(자퇴)를 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확인만 있으면 휴학(자퇴)처리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학생 자필서명과 부모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참고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4쪽

Q24 [자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고등학생이라도 의무교육대상인데 부모님 해외파견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부모님이 자퇴를 원한다면 자퇴처리가 가능한가요?

A 자퇴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특수 교육대상학생의 경우 면제처리해야 하지만 학부모님이 자퇴를 원할 경우 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신청 후 자퇴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4쪽

Q25 [자퇴]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 대상인 학생이 자퇴를 원할 경우 자퇴처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자퇴는 개인사정 또는 가정사정 등 학생의 바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7쪽

Q26 [자퇴] 고등학교 신입생 학적생성일이 3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입학일 전날에 자퇴가 가능한가요?

A 학적생성일은 3월 1일이므로 입학일 전날에 학적이 생성된 상태에서 자퇴 처리가 가능하며 실제 수업일수는 ‘·’로 기재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4쪽

Q27 [자퇴] 자퇴처리가 완료된 후에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자퇴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자퇴 처리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자퇴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28 [휴학] 휴학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질병,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상해, 현역병 지원입대 등이 있습니다. 이때 휴학원과 객관적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지만, 학생이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4, 66쪽

Q29 [휴학]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 휴학처리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휴학은 당해 학교 학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4쪽

Q30 [휴학] 외국소재 학교와 자매결연한 학교로 한 학기 출국하는 경우 휴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휴학은 정원 내로 관리되므로 이중학적으로 처리되어 자퇴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4쪽

Q31 [휴학] 휴학한 학생의 복학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다음 학년도 휴학일 이전까지 복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면 당해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학이 가능합니다.

Q32 [휴학] 2025년 3월 4일 질병으로 고등학교를 휴학한 학생이 일주일 후 휴학을 취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휴학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33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학적처리 용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어 학적처리 용어도 휴학, 자퇴 등이 아닌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유예, 면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사용합니다. 유예, 면제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자문 및 도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학적을 처리합니다.

Q34 [자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아 진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퇴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다만, 이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따라 자퇴처리 가능합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6, 50, 89, 103쪽

Q35 [유급·유예·출석일수] 귀국학생 등의 학년 진급기준 출석일수는 며칠인가요?

A 귀국학생 진급 출석일수는 입급일로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3쪽

Q36 [진급] 검정고시로 추가입학하여 입급한 학생과 원적교에 차상위 학년으로 편입학하여 입급한 학생의 진급을 위한 출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정고시 합격으로 추가입학한 학생은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원적교에 차상위 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입급일로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Q37 [사망·명예졸업] 학생 사망 시 학적처리 기준일은 언제이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학생이 사망한 경우 제적·면제의 학적처리 기준일은 학생의 사망일자입니다.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참고로 학적사항과 특기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나타납니다(학적 특기사항은 학적 변동의 사유를 입력함).

학적사항	2025년 02월 07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5년 03월 01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5년 09월 07일 제적)
특기사항	2025.09.07. 질병으로 사망

참고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0쪽

Q38 [전출·입] 고등학교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전학 신청이 가능하가요?

A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도 전학은 원칙적으로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가 거주지를 이전해야 전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Q39 [전출·입] 고등학교 3학년 대입업무를 고려한 전출·입 가능 허용일은 언제까지인가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다른가요?

A 평준화 지역의 경우 전·출입 허용은 5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전·출입 허용은 3학년 1학기 말까지이나 3학년 2학기의 경우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Q40 [편입학] 고등학교 3학년 대입업무를 고려한 편입학 가능 허용일은 언제까지인가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다른가요?

A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모두 학교장이 편입학 가능 허용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Q41 [전출] 일반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A 현행법상으로는 전출입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제 89조에 근거하는데, 「초·중등 교육법」에서 언급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다양한 학교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학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전한 규정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학교에서 학력인정시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퇴 후 편입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434쪽

Q42 [기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입급한 학생의 건강기록부 예방접종 기록이 공란 인데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일반학생의 경우) 보건질병관리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별 누리집-예방접종도우미 접속 -예방접종 관리-전자민원 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에서 다운받아 입력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하면 됩니다.

Q43 [기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말에 자퇴 후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다시 원적교로 입급 시 2학년 1학기로 입급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나 「대안 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교육시설로서,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적교 1학년 2학기로 입급해야 합니다. 이때 학적처리 용어는 재입학이며, 학생과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학년 1학기로도 입급이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배정·입학 관리 관련 서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서식 1 내교 통지서(예시)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Chapter 04

Chapter 05

Chapter 06

Chapter 07

Chapter 08

Chapter 09

내교 통지서

○△△ 님 귀하

학생명: ○○○

생년월일: 20○○. ○○. ○○.

주소:

연락처:

위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출석) 기일에 입학(출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보호자는 20○○. ○○. ○○.() 00:00에 본교의 내교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 ○○. ○○.() 00:00
 - 장소: ○○중학교 □□□
 - 유의사항: 자녀 동행 필수
-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 해당 서식을 내부결재하고 원본은 등기(내용증명)로 학부모에게 전달함.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OOOO학교(이하 ‘학교’)는 「대한민국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 학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본인 식별 및 정보 제공
-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 각종 학생 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상담
-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 재학기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학 생 : ○○○ (서명)
 학부모(또는 보호자) : ○○○ (서명)

○○중학교장 귀하

서식 3 가정방문 시 점검표(예시)

가정방문 시 점검표

○ 학교 자체 보관

- 반드시 학생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학생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 해당 학교 사정에 맞게 일부 수정 가능

점검일시	2000. . . (00:00~00:00)				
점검자	학교명		성명	직책	연락처
	행정복지센터명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 학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	○○○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주소	경기도 ○○○구 ○○○로			
	연락처				
	미인정결석 시작일				
점검 결과					
학생 거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보호자의 학생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input type="checkbox"/>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input type="checkbox"/>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input type="checkbox"/>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연락두절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학생 면담 (학생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외관상 학대 의심 여부 확인(멍,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 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미인정결석 사유 ※ 주된 사유에 √	가사	경제사정 (), 가정불화 (), 주거불안정 (), 기타 ()			
	품행	폭행(가해) 절도 등 (), 이성교제 (), 기타 ()			
	부적응	엄격한 교직 등 (), 학습부진·학업기피 (), 인간관계악화 (), 기타 ()			
	기타	미인정 해외출국 (), 가출 (), 행방불명 (), 대안교육 (), 종교 (), 방송활동 (), 기타 ()			
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 의뢰 () ② 출석독려 () ③ 기타 조치사항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별도로 받아야 함(서식 2참조).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예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학적처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실거주 주소지 확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면제 시 활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학생 본인		-	
	부		-	
	모		-	

2. 이용기관의 명칭 : ○○중학교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5 학생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서(예시)

학생 보호자 대상 취학의무 안내서(예시) (학교방문 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유예, 면제,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등) 또는 기타 필요시 사용

정보	보호자 / 학생	성명	홍길동 / 홍대한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확인 사항〉		확인 여부
1	의무교육 관련 보호자의 취학의무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와 관련하여 취학(입학)에 대한 독려를 받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번, 4번은 해외 출국인 경우만 작성〉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외 출국 이후에도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연2회 보호자 및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선이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PC 등)를 통해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를 받고, 숙지하셨습니까? 출처: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변경된 연락처를 재직교(취학 배정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해외 출국인 경우, 해외 거주 예정 주소 및 연락처 작성:

보호자 정보	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친인척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연락처 포함하여 최소한 5개 연락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는 예시이며, 연락가능한 친인척 번호로 작성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취학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해 학교에서는 해외 출국을 한 학생의 경우에도 소재·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학대상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인 ○○○는(은)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학교, 경찰의 확인)에 적극 협조할 것과 상기 취학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 . . 보호자 (인)

서식 6 미입학 학생(장기결석 학생) 관리카드(예시 1/2)

미입학 학생(장기결석 학생) 관리카드

※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앞쪽)

기관명	***** 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00-0001호	
①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학생 연락처		
	주소					
	보호자	부		보호자	부	
	성명	모		연락처	모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업무	성명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비고						
②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예비소집일 ~ 입학전일					
	입학(결석)일 이전					
	미입학(결석) 1일					
	미입학(결석) 2일					
	미입학(결석) 3일 ~ 9일					
	사유	<p>[면제사유] : <input type="checkbox"/> 인정유학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input type="checkbox"/> 이민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득이한 사유</p> <p>[유예사유] : <input type="checkbox"/> 대안교육기관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발육부진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득이한 사유</p> <p>[기타사유] : <input type="checkbox"/>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 내 학습 <input type="checkbox"/> 미인정 해외출국 <input type="checkbox"/> 기타()</p> <p>상세사유</p>				
	가정방문일시					
	학부모출석일시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개최 일시 : - 참석자 : - 회의내용 : 				
정원 외 관리 일시						
경찰신고일시						
기타(조치결과 등)						
작성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카드 작성 주체 :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전담기구(학교의 장은 관리카드 작성 시 적극 협조) * 관리카드 작성 대상자 :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전담기구에서 관리하는 대상 학생 전원 * 관리카드 작성 방법 : 교육지원청/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분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관리사항을 기록 관리함. 					

※ 본 서식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미입학 학생(장기결석 학생) 학생 등록 시 활용할 수 있음.

서식 6 미입학 학생(장기결석 학생) 관리카드(예시 2/2)

※ 가급적 확인 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역

[장기결석 학생 관리카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미인정결석학생관리-미인정결석학생관리]에서 제공하는 서식임.

미인정결석 관리항목			
*결석시유	가정내학습	*결석사유확인일자	2025.04.18. <input type="button" value=""/>
비고	<input type="text"/>		
*소재확인여부	소재확인	*소재여부확인일자	2025.04.18. <input type="button" value=""/>
비고	<input type="text"/>		
*집중관리대상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장기미인정결석일자 (7일~10일)	<input type="button" value=""/>
집중관리대상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집기"/> <input type="button" value="펼치기"/>		

※ 집중관리대상자 범위(예시)

-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 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진중과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가정 내 학습, 자살 일반관심군·우선관심군,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등

- 교육지원청·초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별도 선정·통보한 집중관리대상

공문서식 예시 1 경찰 수사 의뢰 요청 공문(예시)

수신 ○○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입학(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수사 의뢰 요청

-
1.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본교에 입학 배정을 받은 학생 중에 입학을 하지 않은(장기 미인정결석 중인) 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불임과 같이 수사를 의뢰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 1부. 끝.

(다음 페이지 계속)

불임 예시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예시) (가정방문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후 작성)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

유형 구분	소재 수사□ 학대(의심) 수사□ 보호자에 의한 가출 신고□ 취학의무 유예·면제□ (장기) 미인정결석□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계
인적사항	아동				
	보호자1				
	보호자2				
	〈확인 및 조회 사항〉				
학교·읍면동 가정방문 실시 결과	1차	방문 일시 및 방문결과 (기초조사 자료에 활용토록 주거지 세부사항 기재)			
	2차	방문 일시 및 방문결과 ※ 1차 가정방문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지 못하여 재차 방문한 경우를 말함 ※ 2차를 실시한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정보 자료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일자: 2000.0.0.(요일) 00:00 - 조회결과: ※ 주소지 이전·전출입 사항 및 변경된 연락처 등 주민등록초본 통해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일자: 2000.0.0.(요일) 00:00 - 조회결과: (출국연월일: . . .) (입국연월일: . . .)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조회 불가능 시 체크 □ 				
학적 변동 사유 ※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유예·면제 사유 <i>예시) 해당 아동은 2000.0.0. 부모님과 함께 00로 출국하여/00 병명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2000.0.0. 일자로 취학유예(면제)가 결정된 학생임</i>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사유 <i>예시) 해당 아동은 00일 이상 결석하여 2000.0.0일자로 정원외 관리 학적 반영된 아동임</i>				
요청 사유 (학대의심 정황기재 등)	<i>예시) 해당 아동은 '00.0.0. 부모에 의한 신체적(정서적·방임 등) 학대로 0회 신고이력이 있음 /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자·친인척 등의 신체적(정서적·방임 등) 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변인(친구·이웃) 의 진술을 청취한 바 있음 등</i>				

* 수사요청 사유별로 해당 〈확인 및 조회 사항〉을 기재 후 수사의뢰 하기 바랍니다.

예시) 아동학대인 경우 출입국사실조회 등은 미기재, 소재불명인 경우는 주민등록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 필수 기재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랍니다.

요청인 성명: 학교장(또는 담임, 학적담당 교원)

소속: ○○○학교

연락처: 학교번호, 010-0000-000

공문서식 예시 2 경찰 수사 의뢰 요청 사실의 교육청 보고 서식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미입학(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수사 의뢰 사항 보고

-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본교에 입학 배정을 받은 학생 중에 입학을 하지 않은 학생(장기 미인정결석 중인 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불임과 같이 수사 의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연번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비고(특이동향)

불임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 1부. 끝.

※ 개인정보 포함 시에는 대국민 공개여부를 '비공개(6호)', 직원열람제한을 '영구'로 설정함.

공문서식 예시 3 경찰 수사 결과의 교육청 보고 서식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미입학(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 사항 보고

-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본교에 입학 배정을 받은 학생 중에 입학을 하지 않은 학생(장기 미인정결석중인 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한 결과 불임과 같이 수사의뢰 결과를 회신 받았음을 보고합니다.

불임 경찰 수사 의뢰 결과 회신서 1부. 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전입학·전출 관련 서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서식 7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예시)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접수 번호	
학생	현 주 소			
	성 명			
	재 적 학 교	○○ 시/도 ○○ 시/군/구 ○○ 중학교 ○ 학년	재 적 기 간	20 년 월 일 재학중 20 년 월 일 재학하였음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보호자	현 주 소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 과거 ○○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없음	
본인은 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귀 중학교 제()학년에 전입학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해당 사유 있을 경우에만 작성):				
20○○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 (인)				
○○중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전·편입학 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전입학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보호자) : (인)		
서약사항: 위 기록 내용이 허위(위장전입 등)로 확인될 때에는 배정이 취소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식 8 부분전입 사유서(예시)

부분전입 사유서

학생성명		생년월일	
미전입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부 / 모)
연락처			
주소			
미전입 사유			

본인은 위 사유로 학생 ()와 전입하지 못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며, 부분전입이 위장전입과 관련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정 취소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작성자 : (인)

○○중학교장 귀하

서식 9 친권자 양육위임 동의서(예시)

친권자 양육위임 동의서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친권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본인은 학생 ()의 친권자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에게 위임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양육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20○○년 월 일

친권자 : (인)

- 붙임 1.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친권자 신분증 사본 1부.
 3. 양육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중학교장 귀하

서식 10 교육환경 변경 전학 - 보호자 전출 동의서(예시)

보호자 전출 동의서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재적교			학년반		
보호자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전출 희망교	1순위		2순위		3순위
전출 희망 사유					

20○○년 월 일

보호자 : (인)

○○중학교장 귀하

서식 11 교육환경 변경 전학 - 학교장 의견서(예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학)

학교장 의견서

학생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위 학생은... (학생 상황을 기재)

20○○년 월 일

 ○ 중 학 교 장

서식 12 교육환경 변경 전학 – 담임 의견서(예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학)

담임 의견서

학생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위 학생은... (학생 상황을 기재)

20○○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 ○ 중 학 교

공문서식 예시 4 교육환경 변경 전학 공문 서식(예시)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환경 변경을 위한 학교 지정 전학 의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의한 전학)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2. 본교에 재학 중인 아래 학생에 대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어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학교 지정 전학을 의뢰합니다.

학교명	학년반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전입학 배정 희망교	비고
○○중학교					(1순위) ○○중학교 (2순위) □□중학교 (3순위) ◇◇중학교	
전학 의뢰 사유 (예시)	20○○년 가정사정에 의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면접교섭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어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라 전출을 희망함.					

- 붙임 1. 보호자 전출 동의서 1부.
 2. 학교장 의견서 1부.
 3. 담임 의견서 1부.
 4. 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끝.

* 공문 작성 시 세부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름(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 기재 내용 및 서류 확인 필요)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유예·면제·정원외 학적관리 관련 서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서식 13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서식(예시)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학생	학교명		학년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신청 사유				
첨부서류				
비고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중학교장 귀하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4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신청서 서식(예시)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신청서

학생	학교명		학년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신청 사유				
첨부서류				
비고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중학교장 귀하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는 하지 않음.

서식 15 대안학교 취학 의무 유예 희망자 인적사항 (대안교육기관 → 학교)(예시)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Chapter 04

Chapter 05

Chapter 06

Chapter 07

Chapter 08

Chapter 09

취학 의무 유예 희망자 인적사항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연락처			연락처	
	주소				

[취학 의무 유예 신청을 위한 인적사항 제공 동의]

본인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 신청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학 생 [예 아니오]
 보호자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수집이용목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신청
- 수집항목 : 학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주소
-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파기)
-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취학 의무 유예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0(학교)에서 취학 의무 유예를 희망하는 재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장 (성명) (직인)

20 년 월 일

○○중학교장 귀하

서식 16 신청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예시)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님 귀하

학 생 명: ○○○

생년월일: 20○○. ○○. ○○.

주 소:

연 락 처:

○○○의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 ○○. ○○.() 00:00
- 장소: ○○중학교 □□□
- 사유: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에 대한 심의
- 참석 대상: 대상자 ○○○, 보호자 ○△△

20 년 월 일

○○ 중 학 교 장 (직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7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결과 보고서(기록부) 서식(예시)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Chapter 04

Chapter 05

Chapter 06

Chapter 07

Chapter 08

Chapter 09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20○○학년도 제○차 ○○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심의 회의록			제 호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20○○학년도 ○○○○학생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에 대한 심의		
협의 사항			
붙임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록부 1부. 2. 심의 결과 보고서(기록부) 1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기록부)

20○○학년도

○○중학교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심의내용	신청사유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	심의결과
1			유예	질병		미승인(사유)
2			면제	검정고시합격		승인
3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미인정유학		승인
4						

*유예 일자, 면제 일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 기재

서식 18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승인 통지문(예시)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승인 통지문

○△△ 님 귀하

학 생 명: ○○○

생년월일: 20○○. ○○. ○○.

주 소:

연 락 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20○○. ○○. ○○.(□) 00:00) 개최 결과, ○○○은 □□중학교 취학 의무가 당해 학년도 말까지
(면제 시 생략)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중 학 교 장 (직인)

서식 19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미승인 통지문(예시)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미승인 통지문

○△△ 님 귀하

학 생 명: ○○○

생년월일: 20○○. ○○. ○○.

주 소:

연 락 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 ○○.(□) 00:00) 개최 결과, ○○○의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호자께서는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중 학 교 장 (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 대상 학생을 의무교육기관에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식 20 재취학 통지서(예시)

재 취 학 통 지 서

대 상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	20○○. ○○. ○○.	학업중단 학년	
보 호 자			
성 명		관 계	
주 소			
연락처			

위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본교 재학 중 20○○학년도에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되어 현재 '정원 외 관리'되고 있으며, 20□□학년도 '재취학' 대상입니다.

이에 재취학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다음 내교 일시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재취학 신청을 하거나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승인된 학생의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제3호).

다 음

- 내교일시: 20○○. ○○. ○○.() 00:00
- 학교전화: 031-000-0000, 학적 담당

20 년 월 일

○○ 중 학 교 장 (직인)

공문서식 예시 5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제○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 20○○학년도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신청한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가. 안건:
- 나. 일시: 20○○. ○○. ○○.() 00:00
- 다. 장소: ○○중학교 □□□

- 붙임 1.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자 명단 1부.
 2.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1부.
 3. 첨부서류(사유별 증빙서류 일체) ○부.
 4. 배정통지서(신입생 중 면제를 신청한 경우) 1부. 끝.

공문서식 예시 6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관련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제○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 관련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 나. ○○중학교-0000(20○○. ○○. ○○)
2. 20○○학년도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록부 1부.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결과 보고서(기록부) 1부. 끝.

* 1.의 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공문번호임.

공문서식 예시 7 유예 처리 결정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예 처리 결정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하고자 합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심의 결과	유예 사유	유예 일자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
1							
2							

끝.

공문서식 예시 8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결정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결정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하고자 합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심의 결과	장기결석 사유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
1						
2						

끝.

공문서식 예시 9 면제 처리 결정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면제 처리 결정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심의 결과	면제 사유	면제 일자
1						
2						

끝.

공문서식 예시 10 승인(미승인) 통지문 발송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승인(미승인) 통지문 발송

1. 관련
 - 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나. ○○중학교-0000(20○○. ○○. ○○)
2.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취학의무의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가 결정된 학생에 대한 승인(미승인) 통지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붙임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승인(미승인) 통지문 1부(우편발송, 메일발송). 끝.

※ 1.의 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공문번호임.

공문서식 예시 11

재취학 통지서 발송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20◇◇학년도 재취학 통지서 발송

1. 관련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3호
- 나.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2025. 4.)

2. 20◇◇학년도가 도래함에 따라 20○○ 학년도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명) 보호자에게 붙임과 같이 재취학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취학 통지서 1부(우편발송, 메일발송). 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취학·재취학 및 편입학· 귀국학생 등 관리 관련 서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서식 21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편입학) 신청서(예시)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편입학) 신청서

대상 학생	성명(성별)		원적교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자	성명(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적 현황	구분(✓)	학적관리 사유	학적관리 일자(학년)			
	유예()	예시) 학부모의 신청(질병)에 의함.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인함.	년 월 일 ()학년			
	면제()	예시)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함.	년 월 일 ()학년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	예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교로 장기결석함.	년 월 일 ()학년			
재취학(편입학) 신청사유						
재취학(편입학) 보호자 동의서	위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재취학(편입학)하는 데 동의하며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재취학(편입학) 희망 학년: ()학년					
국외 학력	국가명	학교명	재학 기간	재학 학년(✓)	국내해당학년	정규학교여부(✓)
			... ~ ... (년 개월간)	()학년 (재학□, 수료□)	()학년	정규□, 비정규□
보호자 확인서			... ~ ... (년 개월간)	()학년 (재학□, 수료□)	()학년	정규□, 비정규□
	위 학생의 재취학(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교장이 발급한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되거나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장의 재취학(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재취학(편입학)을 요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중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재취학 처리
- 수집 항목(일반개인정보)
 -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적, 학력현황
 -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이용 및 보유 기간: 대상자의 의무교육 연령 기간

동의 예 아니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재취학 심의가 불가합니다.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생 성명: (인 또는 서명)

보호자(법적대리인) 성명(학생과의 관계): (인 또는 서명)

서식 22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예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른 귀국학생 재취학 학년 결정 심의				
협의 사항	1. 대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재취학 희망학년	비고 (학적변동 사항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개요				
	1) 평가 교과: 2) 평가 방법: 3) 이수인정 점수: 과목별 60점 이상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결과					
1) 평가 일시: 2) 평가 결과:					
4. 심의 결과 및 계획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Chapter 04

Chapter 05

Chapter 06

Chapter 07

Chapter 08

Chapter 09

공문서식 예시 12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취학 신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학교규칙 제○조○항
 2. 취학의무를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재취학하고자 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가. 일시: 20○○. ○○. ○○.() 00:00
- 나. 장소: ○○중학교 □□□
- 다. 대상

학업중단 학교명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국외학교명/ 대안교육기관명	재취학 희망학년

라. 내용(아래 내용은 각 학교의 학칙에 따름)

- 1) 평가 교과(직전 학기 편성 과목)
 - 2학년 1학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정보
 - 3학년 1학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미술, 영어, 한문
- 2) 이수인정 점수: 교과별 60점(예시) 이상(학생 및 학부모 요청 시 1회에 한해 재응시 기회 부여)

마. 기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 국외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학년 결정
※ 면제자 등 이수인정평가 제외자는 국외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따라 학년 결정

붙임 1. ○학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지 1부.

2. □학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지 1부. 끝.

※ 타학교 재학 중에 유예·면제·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되었을 때는 보호자는 학업중단 시의 학적사항 확인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유예되었을 때는 보호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공문서식 예시 13 재취학 허가 내부결재 서식(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취학 신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재취학 허가)

1. 관련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나. ○○중학교-0000(20○○. ○○. ○○)

2.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학생의 재취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국외학교명/ 대안교육기관명	배정 학년	학업중단 학교명(학년반)	재취학 일자

- 붙임 1.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회의록 1부.
 2. 재취학 신청서 1부.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해당자)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귀국 이후 발행한 것) 1부.
 5. 국외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 각 1부.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기간 증빙 서류(해당자) 1부.
 7.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1부.
 8.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지(해당자) 1부. 끝.

- * 정당한 해외 출국 후 입학*·재취학·편입학의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대한민국 학적이 없는 귀국 학생이 입학*·취학·편입학한 경우에는 본 기안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붙임 서류는 입학*·재취학·편입학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학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에서 1학년으로 입급 시 적용됨.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조기진급 및 졸업 관련 서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서식 23 교과목별 조기이수 신청(동의)서(예시)

교과목별 조기이수 신청(동의)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하여 ()학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학 생 성 명: (인)

보호자 성 명: (인)

○○중학교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학생, 보호자 동의로 간주함.

서식 24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 추천서(예시)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대상자 추천서

인적 사항	성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예정년도		년 월		
학업 성취	교과	학업성취 수행 정도						
	국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도덕							
	과학							
	영어							
지능 검사	지능검사명			지능지수		적정 여부		
						(적합, 부적합)		
입상 실적	대회명		수상실적	수상년월일		시상기관	비고	
담임 의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최종 판정		(적합, 부적합)	

학교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위한 평가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교사 (인 또는 서명)

○○중학교장 귀하

서식 2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 추천서(예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 추천서

인적 사항	성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예정년도	년 월
학업 성취	교과	학업성취 수행 정도		
	국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도덕			
	과학			
	영어			
담임 의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최종 판정	(적합, 부적합)	

학교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교사 (인 또는 서명)

○○중학교장 귀하

서식 26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대상자 선정 통지서(예시)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선정 통지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상급학교 조기입학로 선정됨(선정되지 않음)

※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교과목별 조기이수를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선정 포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포기서 제출기한: 20○○년 ○○월 ○○일

20○○년 ○○월 ○○일

○○ 중 학 교 장 (직인)

서식 27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대상자 선정 포기서(예시)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선정 포기서

소 속: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위 학생은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중학교장 귀하

서식 28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서(조기진급, 조기졸업용)(예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서(조기진급, 조기졸업용)

인적 사항	성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예정년도			년 월		
학업 성취	교과	학업성취 수행 정도						
	국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도덕							
	과학							
	영어							
지능 검사	지능검사명		지능지수	적정 여부				
				(적합, 부적합)				
입상 실적	대회명		수상실적	수상년월일	시상기관	비고		
담임 의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최종 판정			(적합, 부적합)	

학교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위한 현 학년(차상급 학년)의 교과목별 이수를 인정합니다.

20○○년 ○○월 ○○일

○○중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장 (인 또는 서명)

○○중학교장 귀하

서식 29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서(상급학교 조기입학용)(예시)

인적 사항	성명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예정년도	년 월	
학업 성취	교과	학업성취 수행 정도			
	국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도덕				
	과학				
	영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의견		학교장 최종 판정		

학교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를 인정합니다.

20○○년 ○○월 ○○일

○○중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장 (인 또는 서명)

○○중학교장 귀하

공문서식 예시 14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 관련: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직위	성 명	직위	생년월일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끝.

공문서식 예시 15

조기진급·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평가대상자 추천(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평가 대상자 추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 위 법령에 따라 다음 학생을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평가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구분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추천자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붙임 1.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동의)서 1부.

2. 추천서 1부.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기타 증빙서류 1부.

5. 교과목별 조기이수 신청(동의)서 1부. 끝.

공문서식 예시 16

조기진급·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확정 및 시행(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년도 조기진급(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확정

1. 관련: 학칙 제○조, ○○중학교-○○(20○○. ○○. ○○.)

2. 20○○년 ○월 ○일자 조기진급(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조기진급(조기졸업자·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명단

구분	연번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진급학년 (조기입학학년)	특기사항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고등학교 주요 학적 관련 서식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서식 30 휴학 신청서(예시)

휴학 신청서

학교명				학년반번호			
학생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보호자 (친권자) 학생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휴학기간	20 . . .() ~ 20 . . .()						
복학 예정일	20 . . .()						
첨부서류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담임의견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학 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휴학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학생 성명: (인)

보호자(친권자) 성명: (인)

서식 31 복학 신청서(예시)

복학 신청서

학교명			학년반번호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보호자 (친권자)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학부모 소견서, 의사 진단서 등 복학의 사유(휴학 사유 소멸 입증)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학기간 만료전 복학 시) 등 1부.				

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복학 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복학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비동의

학생 성명: (인)

보호자(친권자) 성명: (인)

서식 32 자퇴 신청서(예시)

자퇴 신청서

학교명				학년반번호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보호자 (친권자)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학부모의견서, 담임의견서, 학업중단 숙려제신청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서식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자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학생 성명: (인)

보호자(친권자) 성명: (인)

서식 3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법정의무사항)

학교

(학업중단 학생 정보제공·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합니다.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등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청소년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청소년 법정대리인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이용기간: 5년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 제공 동의의 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파기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확인

청소년 성명	청소년 생년월일	청소년 성별
청소년 주소		청소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정대리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성명 청소년의 생년월일 청소년의 성별 청소년의 주소 청소년의 연락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이용기간 : 6개월 파기 방법 : 개인정보 제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및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에게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파기

* 아래 동의서식은 질병 또는 출국 사유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작성(해당없을 시 작성불요)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연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을 안내받았으며,
 - (청소년) 위 안내서에 작성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부동의),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
 - (법정대리인) 위 안내서에 작성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부동의),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 시만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업중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관리-학교밖청소년연계관리및전송]에서 등록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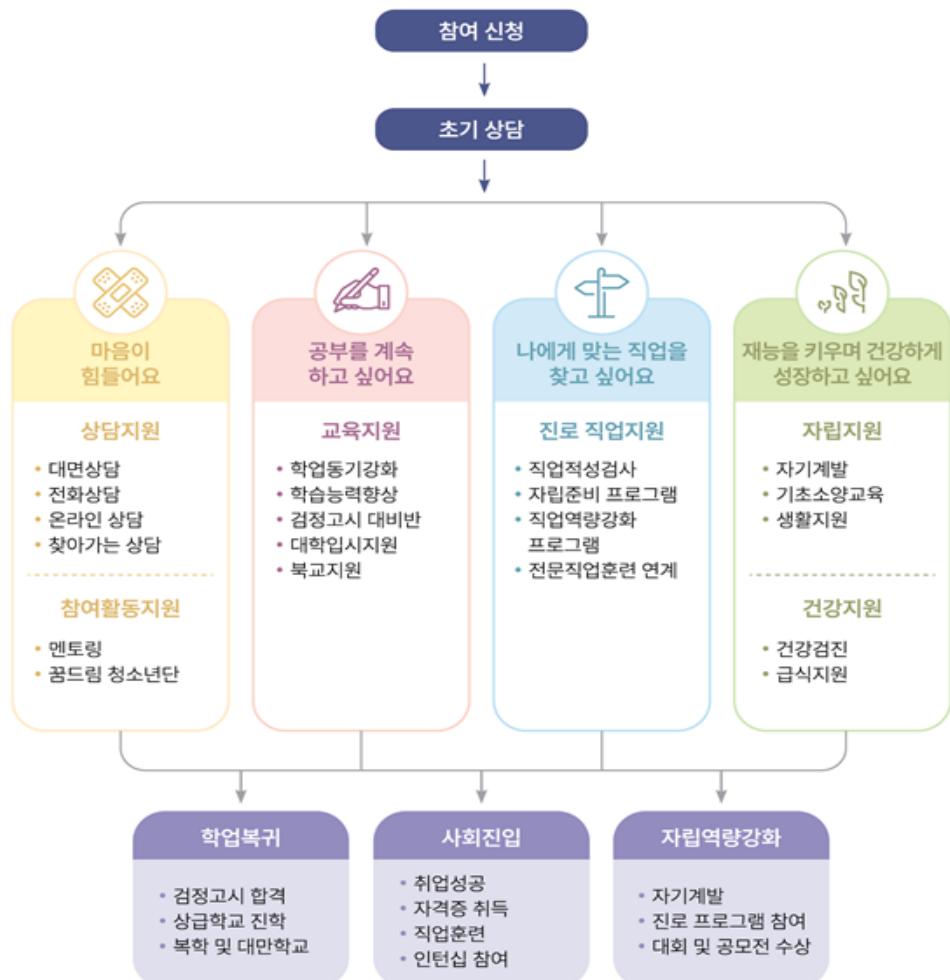
▶ 지원대상: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1)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2)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지원프로그램: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직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

▶ 이용방법

- www.kdream.or.kr에서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은 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 청소년 상담 ☎ 지역번호+1388로 전화 문의



〈출처〉 www.kdream.or.kr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꿈이음 사업)〉

▶ **지원대상:**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정원외 학적관리 되는 사람

- 초등학교 단계: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24세 이하

- 중학교 단계: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24세 이하

▶ **학습지원 프로그램**

- 온라인: (초등학교) 꿈이음 EBS 온라인 프로그램,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 오프라인: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생학습계좌제, 친구랑 등)에서 운영

하는 교과, 문화체험, 예체능, 직업체험 프로그램 중 교육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

※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www.educerti.or.kr에서 확인 가능

▶ **학력인정:** 초·중학교별 기준 시수 이상 이수 시 졸업학력 인정

▶ **이용방법 및 학력인정 세부사항 안내:** www.educerti.or.kr / 043-530-9160, 9716 /

educerti@kedi.kr

서식 34 재(편)입학 신청서(예시)

재(편)입학 신청서

학교명 (전체적교)			학년반번호		
학생명 기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재적 기간	년 월 일 입학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까지 재학				
주소					
보호자 (친권자)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위와 같이 학업중단하였던 바, 제 학년에 재(편)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보호자 확인으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재(편)입학 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재(편)입학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비동의	

학생 성명: (인)

보호자(친권자) 성명: (인)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총괄

김영숙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기획

함동철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수학습담당 장학관

이영신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수학습담당 주무관

집필위원

김인정 | 고산유치원 주무관

이은경 | 감일백제중학교 주무관

유지혜 | 성곡중학교 교사

김지영 | 수주중학교 교사

박미지 |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사

권월향 |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주무관

임세경 | 정발고등학교 주무관

안소정 | 화성반월고등학교 주무관

전다운 | 파주교육지원청 주무관

김삼곤 | 영북초등학교 주무관

오진영 | 부천여자중학교 교사

이유숙 | 송전중학교 교사

강서하 | 봉담고등학교 주무관

이연화 | 시흥능곡고등학교 교사

정하정 | 안중고등학교 교사

윤향숙 | 창의고등학교 주무관

김예빈 | 김포교육지원청 주무관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인쇄처 | 디자인펌킨

발행일 | 2025. 08.